

『정선 목민심서』를 내며

이 책은 다산연구회의 『역주 목민심서』를 대중적 교양서로 개편한 것이다. 본래 전부 여섯 권인데 내용을 추리고 뽑아 대폭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1부 6조, 도합 12부 72조로 구성된 체제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목민심서』라 하면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방대한 저술목록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는 데 동의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산 스스로 언표하였듯이 그의 학문체계는 유교경전의 신해석에 기초한 주체의 확립, 『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로 설계한 천하경륜이라는 안팎의 관계로 구축되어 있다. 다산학의 체계상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위상이 잡힌 『목민심서』는 요즘 개념으로는 지방행정의 지침서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렇듯 다분히 실무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목민심서』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마음먹고 읽는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까닭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요컨대 『목민심서』는 자기 시대의 현실에 대한 저자 자신의 뼈저린 고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해법을 진정으로 강구한 것이다. 민(民)을 중심에 둔 사고의 방향에서 정치제도의 개혁과 지방행정의 개선을 도모한다. 거기에

는 다산의 고도로 독창적인 인간학이 개재되어 있다. 다른 무엇보다 '목민'이란 개념이 곧 『목민심서』의 '키워드'이다. 유교적 정치철학인 인정·애민의 정치가 이미 허구화된 상황에서 목민정신의 회복을 갈망한 그 해법은 각주구검(刻舟求劍)처럼 시대역행으로 비치기 쉽다. 그런데 이 고대적 이상은 현재적 실천과 하나로 어울려 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이완될 대로 이완된 말기적 징후 속에서 신음하는 민생의 구원이 일차적 과제였지만, 인간애와 함께 인간성의 신뢰가 바탕에 깔려 그 의미는 능히 진실하고도 심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목민심서』는 대단히 풍부한 사실과 논리로 엮어졌고 또 갖가지 미덕을 간직한 책이다. 실사구시의 방법론으로 모범을 보인 저술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당시의 실상과 관행에 속속들이 파고들어 병폐의 원인을 찾고 치유책을 고안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분석적이며, 무섭도록 현실적이다. 『역주 목민심서』의 「개역판서(改譯版序)」에서 “우리 전근대 사회의 참모습들을 가장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제시해놓은 책이 아마도 『목민심서』가 아닌가 한다”고 언급한 것은 대개 이런 면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민심서』 자체의 특장과 미덕이 거기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일면도 있는 것 같다. 일반 독자가 읽어내기에는 실로 만만치 않다. 지금 대중적 교양서로 이 책을 펴내는 이유이다. 이에 문장을 요즘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다듬었으며,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자주(自註)와 역주들을 빼거나 본문에 풀어 넣었다. 독자들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어디까지나 원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절한 일이었다. 전체를 간추리는 과정에서도 오늘날에 의미가 있고 흥미롭게 여겨지는 부분을 뽑으면서 첫째로 저자의 고심과 탁견이 담긴 대목

이라면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썼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풍속화들을 끼워넣었는데 물론 원전에 없지만 동시대의 연관 자료로서 독자들의 생생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산은 「자서(自序)」에서 “심서(心書)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 이름한 것이다”고 끝을 맺었다. 그 자신이 정치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까닭에 붙인 말이다. 이 맺음말은 실로 비장하다. 오늘의 현실에서 다른 의미로 또 ‘심서’가 된 셈인데 그 참뜻이 살아나기를 고대한다. 이 책은 축약본이다. 교양적 차원을 넘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분들은 응당 『역주 목민심서』, 더 나아가 그 원전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20일

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를 마치면서

드디어 『목민심서』의 역주(譯註) 작업이 끝나게 되었다. 1975년 가을에 『목민심서』 독회(讀會)를 시작했으니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큰 일을 하나 마무리지은 듯 흐뭇한 마음과 함께 고달픈 일에서 벗어난 듯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역주에 신중을 기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수정 보완해서 좀더 충실을 기할 예정이다.

『목민심서』는 원래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굴동(橋洞) 유배지에서 구상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집필했던 것이다. 기나긴 유배생활이 끝날 무렵인 1818년 봄에 초고(草稿)가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향 마현(馬峴)으로 돌아올 때 이 초고를 짚어지고 와서 다시 손질하고 크게 보완하여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1821년 봄이다.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 거저(巨著)를 남긴 작자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던가?

『목민심서』는 요컨대 민(民)과 국가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산은 '민'의 주체성을 긍정하여, '민'의 자율적 참정(參政)과 의사(意思)의 반영으로 체제(體制)를 갖추는 것이 원리에 합당한 것으로 보았다. 실로 지천(至賤)의 상태에서 신음하던 '민'에 대한 연민과 인간적 신뢰에 '민'의 역사 추진력에 대한 튼튼한 믿음을 일체화시켜, 그 바탕에서 '민'과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탕론(湯論)」과 「원목(原

牧)」 등의 논설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이 그의 기본사상이다.

문제는 실천의 측면이다. 당시에는 그의 진보적 정치사상을 구현시킬 만한 사회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이 아득한 경제이론(經世理論)은 결국 탁상공론으로 그칠 뿐이다. 말세적(末世的)인 부패와 횡포, 과중한 수취(收取)로 인해서 '민' 일반의 생존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말하자면 긴급히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라고나 할까. 『목민심서』는 중환자에 대한 처방에 준하는, 막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려는 구민(救民)의 절실한 의도로 씌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체제개혁과 연관된 여러 본질적인 문제는 우선 유보해둔 선상에서 오직 백성의 질고(疾苦)를 대증요법(對症療法) 식으로 치유하여 보다 개선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물론 본질적인 문제를 그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목민심서』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식으로밖에 도리가 없다는 등의 언급과 함께 긴 한숨 소리가 들리며, 그의 기본사상이 저류(底流)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조선후기 급격한 역사변동의 과정에서 이미 공동화(空洞化)된 전통적 민본(民本) 이념에 새로운 정치사회적 실체를 담으려고 한 사상적 노력이 저술의식(著述意識)의 기반에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마치 종합검진을 하듯, '민'이 처한 현실, 정치·사회·경제적 환경과 그 역사적 배경, 봉건국가 통치의 허부말단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모순의 양상을 치밀하고 예리하게, 그리고 총체성의 시각을 잃지 않고 고찰 분석해내고 있다. 『목민심서』의 가장 빛나는 내용이다. 거기에 조선후기 사회 전체의 실상이 거울처럼 드러나서 그 시대를 폭넓게 통찰할 수 있고 나아가 오늘 우리의 착잡한 현실을 비추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차례

우리 모임은 당초 7명으로 출발한 것이 어느덧 16명으로 늘어났다. 독회 10년 동안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연구와 강의로 각자 분주한 일과에서 공동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쪼개낸다는 것부터 보통의 열성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웠거니와, 한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임을 중지하여 『역주 목민심서』도 중동무이로 끝날 곤경을 넘기기까지 하였다. 이 완간(完刊)이 다산선생 서거(逝去) 150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우리로서는 더욱 뜻이 깊다. 우리 모임은 『목민심서』 독회를 통해서 얻은 다산학(茶山學)에 대한 이해와 다져진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를 기초로 삼아 새로운 연구의 공동의 전진을 기약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창작과비평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교정을 맡아주신 정해렴(丁海廉) 씨의 정밀한 눈길이 글자마다에 미쳐 있음을 밝혀둔다.

1985년 겨울
다산연구회

『정선 목민심서』를 내며 · 5
『역주 목민심서』를 마치면서 · 8
『자서(自序)』 · 15

【제1부】 부임(赴任) 6조

1. 임명을 받음 · 21
2. 부임하는 행장 꾸리기 · 24
3. 조정에 하직하기 · 26
4. 부임 행차 · 30
5. 취임 · 33
6. 업무를 시작함 · 37

【제2부】 율기(律己) 6조

1. 바른 몸가짐 · 45
2. 청렴한 마음 · 55
3. 집안을 다스림 · 65
4. 청탁을 물리침 · 68
5. 씩씩이를 절약함 · 74
6. 베풀기를 좋아함 · 79

【제3부】 봉공(奉公) 6조

1. 교화(教化)를 펼침 · 87
2. 법도를 지킴 · 89
3. 예의있는 교제 · 93
4. 보고서 · 101
5. 공물 바치기 · 105
6. 차출되는 일 · 109

【제4부】 애민(愛民) 6조

1. 노인 봉양 · 121
2. 어린이를 보살핌 · 123
3. 가난한 자를 구제함 · 126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 · 130
5. 병자를 돌봄 · 133
6. 재난을 구함 · 135



【제5부】 이전(吏典) 6조

1. 아전 단속 · 141
2. 관속들을 통솔함 · 153
3. 사람 쓰기 · 155
4. 인재의 추천 · 161
5. 물정을 살핌 · 163
6. 고과제도 · 171

【제6부】 호전(戶典) 6조

1. 전정 · 177
2. 세법 · 180
3. 환곡의 장부 · 186
4. 호적 · 197
5. 부역을 공평하게 함 · 199
6. 농사 권장 · 203

【제7부】 예전(禮典) 6조

1. 제사 · 213
2. 손님접대 · 214
3. 백성을 가르침 · 215
4. 교육을 진흥시킴 · 220
5. 신분 구별 · 224
6. 과거공부를 힘쓰도록 함 · 226

【제8부】 병전(兵典) 6조

1. 병역의무자 선정 · 231
2. 군사훈련 · 235
3. 병기 수선 · 238
4. 무예 권장 · 239
5. 변란에 대응하는 법 · 241
6. 외침을 막아내기 · 244



【제9부】 형전(刑典) 6조

1. 송사를 심리하기 · 253
2. 형사사건의 판결 · 264
3. 형벌을 신중하게 씌움 · 267
4. 죄수를 불쌍히 여김 · 270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 · 274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 · 276

【제10부】 공전(工典) 6조

1. 산림 · 283
2. 수리사업 · 286
3. 관아건물 수리 · 289
4. 성의 수축과 보수 · 293
5. 도로 · 294
6. 공작 · 297

【제11부】 진황(賑荒) 6조

1. 구휼물자 준비 · 305
2.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 · 309
3. 세부계획 · 313
4. 시행방법 · 315
5.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책 · 320
6. 나무리 · 323

【제12부】 해관(解官) 6조

1. 임무고대 · 327
2. 돌아가는 행장 · 328
3. 수령을 유임하도록 하는 청원 · 331
4. 수령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 · 333
5. 수령의 재임중 사망 · 334
6. 훌륭한 수령은 떠난 후에도 사랑이 남는다 · 337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조직 · 341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 342

일러두기 · 343

자서(自序)

옛날에 순임금은 요임금의 뒤를 이으면서 12목(牧)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기르게 하였으며, 문왕이 정치제도를 세울 때 사목(司牧)을 두어 목부(牧夫)라 하였으며, 맹자는 평륙(平陸)에 갔을 때 추목(芻牧, 가축 사육)을 백성을 기르는 데 비유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백성을 부양하는 일을 가리켜 목(牧)이라 한 것은 성현의 남긴 뜻이다.

성현의 가르침에는 원래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도(司徒)는 만백성을 가르쳐 각기 수신(修身)케 하고, 태학(太學)에서는 왕족 및 공경대부의 자제들을 가르쳐 각기 수신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목민의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성인의 시대는 너무 멀어서 그 말씀이 희미해져서 그 도(道) 또한 점점 어두워졌으니,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줄은 모른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쓰러져 친구령을 메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들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을 살찌우고 있다.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나의 선친께서 조정의 후한 대우를 받아 두 현의 현감(縣監), 한 군의

군수(郡守), 한 부의 도호부사(都護府使), 한 주의 목사(牧使)를 지냈는데, 모두 잘 다스린 공적이 있었다. 소자는 비록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좃아 배워서 다소간 들은 바가 있었고, 보아서 다소간 깨달은 바도 있었으며, 물러나 이를 시험해봄으로써 다소간 체득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귀양살이하는 몸이 되어 쓰일 데가 없게 되었다. 먼 변방에서 귀양살이한 18년 동안에 오경(五經)과 사서(四書)를 반복해서 연구하여 수기(修己)의 학을 익혔으나, 생각해보니 수기의 학은 학문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중국의 23사(史)와 우리나라의 역사서와 기타 저술 및 문집 등의 여러 서적에서 옛날의 사목(司牧)이 백성을 기른 자취를 골라 위아래로 뽑아 정리·분류·수합하여 차례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남쪽 변두리 땅에서는 전세(田稅)와 공부(貢賦)를 아전들이 농간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어지럽게 생겨났는데, 나의 처지가 낮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매우 상세하여 이것들 또한 종류별로 기록하였으며, 나의 앞은 견해를 덧붙였다. 모두 12부인데 1부는 부임(赴任), 2부는 율기(律己), 3부는 봉공(奉公), 4부는 애민(愛民)이며, 5부에서 10부까지는 육전(六典, 이·호·예·병·형·공)에 관한 사항이고, 11부는 진황(賑荒), 12부는 해관(解官)이다. 12부가 각각 6조로 구성되었으니 모두 72조이다. 여러 조를 합하여 한 권을 만들기도 하고, 한 조를 나누어 몇 권을 만들기도 하였으니, 통틀어 48권으로 하나의 저서가 되었다. 비록 시대를 따르고 습속을 좃았기 때문에 위로 선왕의 헌장(憲章)에 부합될 수는 없을망정, 백성을 기르는 데는 조례를 갖춘 셈이다.

고려말에 비로소 오사(五事), 즉 수령의 직무를 다섯 가지 방면으로 분류해 수령들을 고과(考課)하였고, 우리 조선에서도 그대로 하다가 후에 칠사(七事)로 늘렸다. 오사나 칠사 모두 대체의 방향만을 독려한 것일 따

름이었다. 수령이라는 직분은 관장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여러 조목을 차례로 드러내더라도 오히려 직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스스로 생각해서 행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첫머리와 맨 끝의 2부를 제외한 나머지 10부에 들어 있는 것만 해도 60조나 되니, 진실로 어진 수령이 있어서 자기 직분을 다할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부염(傅琰)은 『이현보(理縣譜)』를, 유이(劉彝)는 『법범(法範)』을, 왕소(王素)는 『독단(獨斷)』을, 장영(張詠)은 『계민집(戒民集)』을, 진덕수(眞德秀)는 『정경(政經)』을, 호태초(胡太初)는 『서언(緒言)』을, 정한봉(鄭漢奉)은 『환택편(宦澤篇)』을 저작하였다. 이 모두 이른바 목민(牧民)에 관한 책이다. 오늘날 이런 책들은 거의 전해오지 않고 오직 음란한 말과 기이한 구절만이 일세를 횡행하니, 나의 이 책인들 어떻게 전해질 수 있으랴? 그러나 『주역』에 이르기를 “앞사람의 말씀이나 지나간 행적들을 많이 익혀서 자기의 덕을 쌓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진실로 내 덕을 쌓기 위한 것이지, 어찌 꼭 목민에만 한정된 것이겠는가?

‘심서(心書)’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 이름한 것이다.

순조 21년(1821) 늦봄에 열수(洌水) 정약용(丁若鏞)은 쓴다.

❁ 제2부 ❁

율기(律記) 6조



1. 바른 몸가짐
2. 청렴한 마음
3. 집안을 다스림
4. 청탁을 물리침
5. 씹씹이를 절약함
6. 베풀기를 좋아함



1. 바른 몸가짐[飭躬]

일상생활을 절도 있게 하고, 옷차림은 단정히 하며, 백성들을 대할 때에는 장중하게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령의 도(道)이다.

밝기 전에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세수하며 옷을 단정히 입고 띠를 두른 후 조용히 앉아서 정신을 함양한다. 얼마쯤 있다가 생각을 풀어내어 오늘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한다. 제일 먼저 무슨 공문(公文)을 처리하고, 다음에는 무슨 명령을 내릴 것인가를 마음속에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을 잘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고, 다음 할 일을 잘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되, 사욕(私欲)을 끊어버리고 하나같이 천리(天理)를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

동이 트면 촛불을 끄고 그대로 단정히 앉아 있다가, 시중드는 종이 시

간이 되었다고 아뢰거든 창문을 열고 관속들의 인사를 받는다.

간혹 보면 소탈함을 좋아하고 구속됨을 싫어하는 자는 망건만 쓰고 두루마기를 걸치거나 혹은 망건도 쓰지 않고 버선도 신지 않은 채 아전과 백성을 대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시경(詩經)』에서는 “위엄있는 차림새를 갖춘 자는 덕(德)의 표현”이고, “공경하고 삼가는 차림새는 백성의 본보기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옛날의 도(道)이다. 위엄있는 차림새를 잃으면 백성들이 본받을 바가 없으니, 무슨 일이 되겠는가?

관아(官衙)에서의 퇴근은 가을과 겨울에는 조금 늦추고, 봄과 여름에는 조금 이르러야 마땅하다.

공사(公事)에 여가가 있거든 반드시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안정시켜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헤아려내어 지성으로 잘되기를 강구해야 한다.

주자는 “오제공(吳濟公)은 날마다 사물을 응접하는 가운데서도 모름지기 한때의 시간을 내어 고요히 정신을 함양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요컨대 일이 번잡할수록 마음을 더욱 느긋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치현결(治縣訣)』에서는 “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의(畏) 한 자뿐이다. 의(義)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요(政要)』에서는 “벼슬살이에는 석 자의 오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청(淸, 맑음)’이고, 둘째는 ‘신(愼, 삼가함)’이며, 셋째는 ‘근(勤, 부지런함)’이다”라고 하였다.

여씨(呂氏)는 『동몽훈(童蒙訓)』에서 “임금을 나의 아버지처럼 섬기고, 아전을 나의 노복처럼 대하며, 백성을 나의 처자처럼 사랑하며, 공무를 집안일처럼 돌보아야만 능히 내 마음을 다한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진한 일이 있다면, 이는 내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을 처리할 때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백성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법도의 범위 내에서 변통을 도모해야 한다. 만약 그 법도가 나라의 기본 법전이 아니며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고쳐서 바로잡아야 한다.

정선(鄭瑄)은 “하늘은 한 사람을 사사로이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많은 가난한 자들을 그에게 부탁하려 함이요, 하늘은 한 사람을 사사로이 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많은 천한 자들을 부탁하려 함이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제 힘으로 먹고 살면서 제 일을 경영하고, 제 피땀으로 얻은 것을 제가 쓰니, 하늘이 오히려 너그럽게 볼 것이요, 부귀한 사람은 벼슬을 하여 녹을 먹되 한민(한 사람)의 피땀을 한 사람이 받아쓰니, 하늘이 그 허물을 경계하는 것이 더욱 엄중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지(韓祉)가 감사로 있을 때 막료들이 아침인사를 오면, 밥상을 내려 주고 술을 들린 다음에는, “내가 어제 한 일 가운데 무슨 허물이 있었는가?” 하고 물었다. 막료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는 “세 사람이 길을 함께 가는 데도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하였거늘, 10여 명의 의견이 어찌 반드시 내 의견과 똑같은 것인가? 그대들은 어서 말하라. 말해서 옳다면 좋을 것이요, 그르다면 서로 토론을 다시 하여 깨우치는 바가 없

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색해서 말했다. 날마다 이같이 물으니 막료들이 미리 의논해 들어와 고하였고, 그 말이 옳으면 비록 대단히 중요하여 고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에 따랐다. 언제나 "천하의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많이 말하지도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 것이다.

백성의 윗사람 된 자는 움직이고 정지하며, 말하고 침묵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모두 살피어 의심쩍게 탐색하는 법이니, 방에서 문으로, 문에서 고을로, 고을로부터는 사방으로 새어나가서 한 도(道)에 다 퍼지게 된다. 군자는 집안에서도 말을 삼가야 하거늘, 하물며 벼슬살이할 때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록 시중드는 아이가 어리고 시중드는 종이 어리석다 하여도, 여러 해를 관청에 있으면 백번 단련된 쇠와 같아서, 모두가 기뻐하고 영리하여 엿보아 살피는 것이 귀신과 같다. 관아의 문을 나서기만 하면 세세한 것도 모두 전하고 누설한다. 내가 10여 년 동안 읍내 바닥에서 귀양살이하면서 그 실정을 알게 되었다. 『주역(周易)』에서는 "군자가 집안에 살면서 그 말이 선(善)하면 천리 밖에서도 이에 응하고, 그 말이 선하지 않으면 천리 밖에서도 이를 어기는데, 하물며 가까이 있는 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시경』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경계하고, 너의 말을 삼가라"고 하였으니, 백성의 윗사람 된 자는 조심해야 한다.

사방의 풍속이 각기 다르니 나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은 마음에 거슬리겠지만, 그래서 꾸짖고 화를 낸다면 역시 건문이 좁고 괴팍한 것이다. 수

령이 악인을 만나서 "이곳의 인심이 순박한데도, 네가 그것을 어지럽히니 죄가 더욱 중하다"고 꾸짖으면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이지만, 수령이 "이곳 인심이 극악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꾸짖으면 사람들이 다 노여워할 것이다. 실언하여 못사람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면, 역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하물며 그 이른바 극악하다는 것은 모두 썰이나 소금, 오이나 채소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으로 인한 것이고, 백성들에게 포학스럽게 대하는 자나 법을 어긴 자에게는 노여워하지도 않으면, 어찌 못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킬 것인가?

아랫사람을 너그럽이 대하면 순종치 않는 백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禮)를 차리는 데 공경하지 아니하면, 볼 것이 무엇 있겠는가" 하였고, 또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벼슬살이에는 위세와 사나움을 앞세우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는 속된 말이다. 먼저 사나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스스로도 좋지 않을 것이다. 죄가 있으면 죄를 주는 것이니, 내가 형벌을 쓰는 것은 각기 그 죄에 합당한 것뿐인데 어찌 위세와 사나움을 앞세울 것인가? 『시경』에서 "그대의 위(威儀)를 공경히 하여 '편안하고 착하게[柔嘉] 하라'고 이른 것처럼, 편안하고 착한 기상이 가장 좋다. 전에 내가 조정에 있을 때에 공경대신(公卿大臣)들을 보면 언제나 그 말씨와 안색이 편안하고 착한 듯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옛사람들만 못할지라도 역시 편안하고 착한 자는 반드시 많은 사람을 얻고 높이 오르지만, 우

악스럽고 사나운 자는 대부분 중도에서 넘어진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고 착한 것이 좋은 기상인 줄 안다.

관부(官府)는 엄숙해야 하는 법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안된다.

수령의 지위는 존엄한 것이므로, 아전들은 엎드리며 백성들은 뜰 아래에 있게 되는 법인데, 감히 다른 사람이 수령의 곁에서 간여할 수 있겠는가? 비록 자제(子弟)나 친척, 귀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모두 물리치고 홀로 앉아 있는 것이 예(禮)에 알맞다. 공청(公廳)에서 물러나온 한가한 낮이나 고요한 밤에 일 없을 때에 불러서 만나보는 것은 괜찮다.

군자가 무겁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 된 자는 진중해야 한다.

동진의 사안(謝安)은 조카의 승전보고를 듣고도 바둑두기를 그치지 않았고, 후한의 유관(劉寬)은 새로 지어 입은 조복에 누군가 국을 엮질렀으나 놀라거나 성내지 않았으니, 모두 평상시에 충분히 생각하고 헤아려 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당해서도 당황하지 않은 것이다. 관아 안에 호랑이나 도적이 들거나, 수재나 화재가 나고 담장이 무너지거나 지붕이 내려앉고, 혹 지네나 뱀이 요 위에 떨어지거나 시중드는 아이가 잘못하여 물을 엮지르고 술잔을 뒤엎는 일이 있더라도, 모름지기 고요히 앉아서 천

천히 그 까닭을 살펴야 한다. 또한 암행어사가 출도(出道)하거나, 좌천이나 파면 등 죄를 묻는 통보서가 갑자기 오더라도 말씨나 안색을 달리하여 남의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나라의 배도(裴度)가 중서성(中書省)에 있을 때, 갑자기 도장이 없어졌다는 보고를 듣고도 그는 여전히 술을 마셨다. 얼마 후에 다시 제자리에서 도장을 찾았다는 보고를 듣고도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누가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이는 필시 아전이 도장을 훔쳐 문서에 찍은 것인데, 급하게 되면 물이나 불 속에 던져버렸겠지만, 늦추어주니 도로 제자리에 갖다놓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도량에 탄복하였다.

술을 끊고 여색(女色)을 멀리하며 노래와 음악을 물리쳐서 공손하고 단정하고 위엄있기를 큰 제사 받들 듯 할 것이요, 감히 놀고 즐기므로써 거칠고 방탕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송나라의 매지(梅摯)가 소주(韶州)를 맡아 다스릴 때에 벼슬살이의 고질병에 관한 글을 지어 말하였다. “벼슬살이에는 다섯 가지 병통이 있다. 급히 재촉하고 함부로 거두어들여 아랫사람한테 끌어다가 위에 갖다바치는 것은 조세의 병통이요, 엄한 법조문을 함부로 둘러대어 선악을 명백히 가리지 못하는 것은 형옥(刑獄)의 병통이요, 밤낮 술잔치에 빠져 나랏일을 등한히하는 것은 음식의 병통이요,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여 사사로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재물의 병통이요, 많은 계집을 끌라 노래와 여색을 즐기는 것은 음란의 병통이다.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백

성이 원망하고 신(神)이 노할 것이니, 편안하던 자는 반드시 병들고 병든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벼슬살이하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풍토의 병을 탓하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상산록(象山錄)』에 이르기를, “술을 좋아하는 것은 다 객기(客氣)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맑은 취미로 잘못 생각하는데, 술마시는 버릇이 오래 가면 게걸스러운 미치광이가 되어 끊으려 해도 되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마시면 주정부리는 자가 있고, 마시면 말 많은 자가 있으며, 마시면 잠자는 자도 있는데, 주정만 부리지 않으면 폐단이 없는 줄로 여긴다. 그러나 잔소리와 군소리는 아전이 괴로이 여길 것이요, 깊이 잠들어 오래 누워 있으면 백성이 원망할 것이다. 어찌 미친 듯 소리지르고 어지러이 떠들며 넘치는 형벌과 지나친 곤장질만이 정사에 해가 된다고 하겠는가? 수령이 된 자는 술을 끊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제나 친척, 손님들이 기생과 가까이하는 것은 더욱 엄히 막아야 할 일이니, 금계(禁戒)를 아주 엄하게 하면 설사 어기는 자가 있더라도 정도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금계를 어긴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지 말고 밀실에서 책망하며, 그 다음날 말을 내어주고 행장을 꾸려서 곧 돌려보내는 것이 최상의 방편이 될 것이다.

노래와 음악은 백성의 원망을 재촉하는 풀무이다. 내 마음은 즐겁지만 좌우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고, 좌우의 마음이 다 즐겁더라도 온 성안 남녀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으며, 성안의 마음이 다 즐거울지라도 온 고을 만민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다. 그 중에 하나라도 춥고 배고파 고달프거나 혹은 벌을 받아 울부짖고 넘어져서, 하늘을 보아도 빛이 없고 참담하여 세상 살아갈 즐거움이 없는 자가 있어서 풍악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이맛살을 찌푸리고 눈을 부릅뜨며 길

바닥에다 욕을 퍼붓고 하늘에다 저주할 것이다. 배고픈 자가 들으면 배고픔을 더욱 한탄할 것이요, 간혀 있는 자가 들으면 간혀 있음을 더욱 슬퍼할 것이다.

수령으로서 부모를 모신 자가 가끔 부모의 생신날에 풍악을 베푸는데, 자신은 이를 효도라 생각하지만 백성들은 이를 저주하기 마련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를 저주하게 한다면 이는 불효가 아닌가? 부모의 생신날에 고을의 모든 늙은이를 위로하는 잔치를 겸해서 한다면 백성들이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詩)나 읊조리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政事)를 아전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큰 잘못이다.

김현성(金玄成)이 여러 번 주군(州郡)을 맡아 다스렸는데, 손을 씻은 듯 깨끗하게 직책에 봉사하여 청렴한 소문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실무에는 익숙하지 못했고 성품이 심히 소탈하고 너그러워 매질하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담담하게 동헌(東軒)에 앉아 종일 시를 읊조렸다.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김현성이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지만 온 고을이 원망하여 탄식하고, 티끌만한 것도 사사로이 범하지 않되 관청 창고는 바닥이 났다”고 하여, 이 말이 한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당나라의 영호도(令狐綯)가 이원(李遠)을 항주자사(杭州刺史)로 천거하자, 임금이 “내가 들으니 원(遠)의 시에 ‘온종일을 오직 한판의 바둑으로 소일하노라’고 하였는데, 어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영호도가 “시인이 흥에 겨워서 그러한 것이지, 사실이 반드시



후원에서 시를 읽고
비독을 두며 소일하는 양반들

그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임금의 "우선 보내어 시험해보도록 하라"고 하였다.

바둑은 그나마 고상하고 운치 있는 취미이다. 근래의 수령들은 정당(政堂)에서 저리(邸吏)나 읍내의 건달들, 하인 무리들과 더불어 투전(鬪錢) 놀음으로 날을 다하고 밤을 새우니, 체모의 손상이 이렇듯 극심해졌다. 아아, 장차 어찌할 것인가?

2. 청렴한 마음[清心]

청렴은 수령의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우리 조선조에 청백리(清白吏)로 뽑힌 사람이 모두 110명인데, 태조 이후에 45명, 중종 이후에 37명, 인조 이후에 28명이었다. 경종 이후로는 드디어 이렇게 뽑는 것조차 끊어지고,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은 더욱 곤궁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400여 년 동안에 예복을 입고 조정에서 벼슬한 자가 거의 몇천 명에서 만 명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청백리로 뽑힌 사람이 겨우 이 정도니 사대부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상산록』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 최상은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 또한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한 필의 말로 조출하게 가는 것이니, 이것이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최하는 무릇 이미 규례(規例)가 된 것이라면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지만, 규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죄를 먼저 짓지 않으며, 향임(鄉任)의 자리를 팔지 않으며, 재해를 입은 논밭에 감해주는 세금을 훔쳐먹거나 곡식을 가지고 농간부리지 않으며,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를 팔아먹지 않으며, 조세를 더 부과하여 나머지를 착복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관리가 모두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최상이 진실로 좋지만, 능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것을 해도 좋다. 이른바 최하의 경우는 옛날 같으면 반드시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에 처했을 것이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공자는 “인자(仁者)는 인(仁)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知者)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고 말했는데, 나는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고 하겠다.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비록 재물을 얻는 데 뜻을 둔다 하더라도 당연히 청렴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늘 보면 지혜와 문벌이 화려하고 재주와 덕망이 가득한 사람이 수백 꾸러미의 돈에 빠져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가서 10년이 지나도록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록 세력이 높고 때를 잘 만나 형벌을 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론은 그 비루함에 침을 뱉으니 명망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문신이 이렇게 되면 가장 영예로운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벼슬을 얻지 못하게 되고, 무신이 이렇게 되면 장수가 되지 못한다. 지혜가 높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욕심이 크므로 청렴한 관리가 되고, 지혜가 짧고 사려가 얕은 사람은 욕심이 작으므로 탐욕한 관리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생각이 여기에 미친다면 청렴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송나라 농부가 밭갈이를 하다가 옥을 주워서 자한(子罕)에게 바쳤으나, 자한은 받지 않았다. 농부가 “이것은 농부들의 보배입니다. 바라옵건대 상공께서는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거듭 청하니, 자한이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나는 받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으니, 만일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그대와 내가 모두 보배를 잃는 셈이네”라고 답하였다.

공의휴(公儀休)가 노나라 재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보내왔으나 받지 않았다. 그 사람이 “재상께서 물고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사운데, 어찌하여 보내드린 물고기를 받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으니, 공의휴가 “물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오. 이제 재상이 되어서 스스로 물고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물고기를 받아서 도리어 면직이 되면 다시 누가 나에게 물고기를 주겠소? 그래서 내가 받지 않는 것이오”라고 대답하였다.

예로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했다.

명나라의 풍유룡(馮猶龍)은 “천하의 한없이 못한 짓은 모두 돈을 버리지 못하는 데 따라 일어나고, 천하의 끝없이 좋은 일은 모두 돈을 버리는 데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정선(鄭瑄)은 이렇게 말하였다. “얼기를 탐내는 자가 만족을 모르는 것은 모두가 사치를 좋아하는 일념 때문이다. 만일 마음이 편안하고 담담하여 죽한 것을 알면, 세상의 재물을 구해서 어디에 쓰겠는가? 청풍명월(淸風明月)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며, 대울타리 띠집은 돈 쓸 일이 없으며, 책을 읽고 도를 이야기하는 데 돈이 요구되지 않으며, 몸을 깨끗이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는 돈이 남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 세상 맛에서 초탈하게 될 것이니, 탐욕스러운 마음이 또한 어디로부터 나오겠는가?”

정선은 또 이렇게 말하였다. “근래 사대부가 밖으로는 공명(功名)을 낚고 안으로는 재산을 경영하며, 천 칸이나 되는 넓은 집채에 기름진 밭이만 경(頃)이나 되고, 남자중은 개미떼 같고 비첩(婢妾)은 구름과 같은데, 입을 열면 인성(人性)과 천리(天理)를 고상하게 담론하고 마음이 맑고 깨끗함을 자부하니, 비록 석가모니처럼 장중한 말을 혀끝에 올린다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에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을 것이니, 이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다.

고려의 나득황(羅得璜)이 백성들의 살을 깎아내듯 세금을 긁어모으면

서 최항(崔沆)에게 아첨하여 제주부사(濟州副使)가 되었다. 송소(宋召)가 제주 수령을 지내다가 횡령죄로 면직되고 나득황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제주에 전에는 작은 도적을 겪었는데 이제 큰 도적을 만났구나”라고 하였다.

이기(李璽)의 『송와잡설(松窩雜說)』에 이르기를, “국초(國初)에 함경도는 야인(野人)과 접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령을 모두 무관에서 뽑아 보내는 것이 관례였으며, 게다가 조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리낄 것 없이 형벌과 세금을 가혹하게 하였다. 간혹 문관을 보냈지만 제대로 된 자가 극히 드물어서 백성들은 그들을 낮도적이라고 하였다. 어떤 함경도 사람이 처음 서울에 와서 성균관(成均館) 앞길에 이르자 동행에게 ‘이곳은 어떤 관청인가?’라고 물었더니, 그 동행이 ‘이곳은 조정에서 낮도둑들을 모아서 기르는 못자리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비록 지나친 말이지만, 이 말을 들은 자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암쇄화』는 이르기를, “백련사(白蓮寺)에는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중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일산(日傘) 그늘 밑에는 큰 도적이 있고, 목탁소리 뒤에는 참 중이 적다’라는 시 구절을 외었다”라고 하였다.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주고받은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아전들은 늘 “이 일은 비밀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퍼뜨리면 제게 해로울 뿐이오니 누가 감히 퍼뜨리겠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래서 수령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뇌물을 혼연히 받지만, 아전은 문을 나서

자마자 마구 떠벌려 자신의 경쟁자를 억누르고자 하니, 그 소문은 삼시 간에 사방으로 퍼지건만 수령은 깊이 들어앉아 고립되어 있어서 전혀 듣지 못하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양진(楊震)이 형주자사(荊州刺史)로 있을 때 왕밀(王密)이 창읍(昌邑)의 수령을 제수받고서 밤에 금 열근을 품고 와 내어놓으면서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니, 양진이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오”라고 대답하자, 왕밀이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은혜로운 정(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진(晉)나라 격(厲) 고을의 수령 원의(袁毅)가 조정의 대신에게 뇌물을 주고 명예를 사고자, 일찍이 산도(山濤)에게 실 100근을 보냈다. 유별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산도는 그냥 실을 받아 들보 위에 얹어놓았다. 나중에 원의의 일이 탄로나자, 산도는 들보 위에서 실을 가져다가 아전에게 내어주었다. 이미 몇해가 지났기 때문에 실은 먼지가 끼어 누렇게 검게 변했지만, 봉인(封印)은 처음 그대로였다.

과격한 행동과 각박한 정사(政事)는 인정에 맞지 않아 군자가 내치는 바이니 취할 것이 아니다.

정선은 “사대부들이 덕(德)을 손상하게 되는 것은 이름을 내려는 마음

이 너무 급한 데서 오는 일이 많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북제(北齊)의 고적간(庫狄干)의 아들인 고적사문(庫狄士文)은 성질이 깨끗하고 모질어서 국가의 봉급도 받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관청 주방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칼을 씌워 옥에 여러 날 가두고, 곤장을 200대나 때린 후에 걸려서 서울로 돌려보냈다. 그는 또 베 한 자, 곡식 한 말의 부정도 용서하지 않고 위에 아뢰어 모두 영남(嶺南)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1천 명이나 되는 귀양간 사람들 모두가 풍토병으로 죽으니, 그 친척들이 울부짖었다. 고적사문은 그들을 잡아 채찍으로 때렸는데, 채찍이 가득 쌓였지만 울부짖음이 더해갈 뿐이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사문의 포악함이 사나운 맹수보다 더하다” 하고 파면시켰다.

정선이 말하기를, “전에 어른들의 말씀들을 들으니, 상관이 탐욕스러우면 백성은 그래도 살길이 있으나, 청렴하면서 각박하면 곧 살길이 막힌다 하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렴한 관리의 자손이 많이 떨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각박함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관가가 정한 가격기준이 너무 험하면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여야 한다.

관에서 정한 가격은 대개 험하고 박한 것을 따르게 마련이고, 혹 그중에 후한 가격을 따른 것이 있어도 관에서는 쓰지 않으니 아전들이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물건값의 높고 낮음은 시기에 따라 변하는데 관의 가격기준은 한번 정하여 백년이 되도록 고치지 않으니, 그 시세에 알맞게 맞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값이 박하면 아전들이 괴롭고, 아전이 괴

로우면 백성을 괴롭히니 결국 백성들에게 그 해(害)가 돌아간다. 아전이 야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대개 아전의 됃됨이는 즐거우면 나아가고 괴로우면 물러서는 법인데,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면 거기에 좋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성이란 즐거워도 머물러 있고 괴로워도 떠나지 못한다. 몸이 토지에 박혀 마치 밭줄로 묶여 매를 맞는 것과 같으니, 비록 그곳을 떠나지 않더라도 고통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어 부역을 면제받은 마을들, 이른바 계방(契房)이 날로 늘어 부역의 공평치 못한 괴로움 때문에 백성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수령이 이 폐단을 없애려고 하면, 아전들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고 말한다. 내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 하나는 모든 고을에서 감사에게 아첨하여 섬기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데 있으며, 다른 하나는 관의 가격기준에 따라 억지로 정한 물건값이 공평하지 못한 데 있다. 아전들은 손해를 보면 반드시 물러난다고 하고 수령이 그들을 만류하려면 반드시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어야 하는데, 위로는 차마 자기 이익을 떼어 내놓을 수 없고 아래로는 세금을 더 매길 수 없다. 그래서 한 마을을 아전에게 떼어주어 계방을 삼게 하니, 천하에 교사스럽고 비루하고 인색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새로 부임하는 모든 수령은 계방을 타파하려고 하지만, 일단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또한 모두가 잠자코 포기하니, 그 근본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려오는 잘못된 관례는 고치도록 결심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관아의 비용으로 쓰기 위해 자질구레한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돈은 결코 관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런 종류의 예는 일일이 들 수 없으니, 모름지기 수령된 자가 의리를 헤아려서 천리에 어긋나고 왕법(王法)에 거슬리는 일은 절대로 자신이 범해서는 안된다. 혹 여러모로 구애되어 혁파하기 어려운 것은 비록 고칠 수는 없더라도 나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수령의 생일에 여러 아전과 군교 들이 성찬을 바치더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아전과 군교 들이 바치는 성찬은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를 빙자하여 가혹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민들의 고기를 빼앗으며, 촌락의 개를 때려잡기도 하고, 메밀과 기름을 절에서 뺏어오기도 하고, 주발과 접시를 질그릇집에서 가져오기도 하니, 이것은 원한을 거둬들이는 물건인 것이다. 어찌 그런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혹 유기(鑪器) 한벌과 삼베 몇곳이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수령의 부모 생신에 바치는 물건은 더욱 받아서는 안된다.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주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또한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 것이다.

늘 보면 청렴하되 똑똑한 체하는 사람은 잘못된 전례에서 생긴 재물을 공리(公理)에 따라 사용하거나, 자기의 봉록을 떼어내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데, 그 일이 비록 잘하는 일이기도 하나 반드시 뽐내면서, “사대부가 어찌 이런 물건을 쓸 수 있느냐?”고 큰소리친다. 아전이 혹 전례를 들어 설명하면 반드시 꾸짖고 곤장을 쳐 자기의 청렴함을 드러낸다. 또한 “남은 봉록으로 내 어찌 돌아가서 전답을 살 수 있겠는가?” 하며 큰소리로 과장하고, 얼굴에 덕을 베풀었다는 표정을 짓고 백성을 대하고 손님을 대할 때 항상 과시하여 그 마음에 수백냥 돈을 대단한 물건이나 되는 듯이 여기니, 식자(識者)들이 곁에서 보면 어찌 속으로 웃지 않으리요. 무릇 재물을 회사하고 봉록을 떼어내어 쓰더라도 마땅히 지나가는 말로 몇마디 해당 아전에게 분부할 뿐이고 다시는 들추어 말하지 말 것이다. 혹시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는 그 정도 내어놓았지만 다음에는 그렇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하고, 말머리를 돌려 다른 일이나 이야기하여 다시는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청렴한 자는 은혜를 베푸는 일이 적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게 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 가볍게 하는 것이 옳다. 청탁이 없으면 청렴하다 말할 수 있다.

아전과 종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 오직 욕심만 있고 천지 자연의 이치를 모른다. 내가 바야흐로 힘써야 하는데 어찌 남을 책망하겠는가? 나를 예(禮)로써 규율하고 남을 보통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에게 세를 더 받아내는 것은 법이

마땅히 엄금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정상적인 수입으로 생각하던 것은 많이 줄여야 한다.

조극선(趙克善)이 수령으로 있을 때, 아전이 관청의 매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매 한 마리를 사서 바치니, 그가 “매가 스스로 날아갔을 뿐인데,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그것을 물리치고 불문에 붙였다.

『상산록』에서는 “늘 보면 속된 수령이 궁한 친구와 가난한 친척을 만나면 자기의 봉록을 떼어 도와주려 하지 않고, 따로 그 사람에게 일거리 하나를 장만해주어 그 청탁을 들어주니, 이는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 족속을 구하는 것이다. 비록 그 족속이 적지 않은 전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고맙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3. 집안을 다스림[齊家]

몸을 닦은 후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고을인들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집안을 잘 다스리는 데는 몇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 데리고 가는 사람의 수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하고, 둘째 치장은 반드시 검소하게 해야 하고, 셋째 음식은 반드시 절약해야 하고, 넷째 규문(閨門)은 반드시 근엄해야 하고, 다섯째

청탁은 반드시 끊어야 하고, 여섯째 물건을 사들이는 데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 조목에 법도를 세우지 못하면 수령으로서의 정사를 가히 알 만하다.

『속대전(續大典)』에 “수령 가운데 가족을 지나치게 많이 데리고 간자와, 관비를 몰래 간통한 자는 모두 적발해서 파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고하건대 국전(國典)에 가족을 많이 거느리는 것을 금하고는 있으나 뚜렷하게 규정한 바는 없다. 마땅히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와 처 외에는 아들 1명만 허용하되, 미혼 자녀들은 모두 허용하고, 사내종 1명, 계집종 2명 외에는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

부모·처자·형제를 육친(六親)이라 한다. 위로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아래로 식객(食客)을 거느리고 또 노비까지 데리고서 온 집안이 이사해 간다면, 모든 일이 얽히고 꼬여 사사로운 일 때문에 공무가 가려지고 정사가 문란해질 것이다. 옛날의 어진 수령들이 가족을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것은 참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직 부모가 연로하셨으면 잘 봉양하는 데에 힘쓸 것이나, 그밖의 일들은 간략함을 좇아야 할 것이다.

의복의 사치는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요 귀신이 미워하는 것이니 복을 깎는 일이다.

주신(周新)이 절강(浙江)의 안찰사로 있을 때에 하루는 부하직원이 구운 거위를 선사하였다. 그는 그 구운 거위를 집에 걸어두고 후에 또 선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키곤 하였다. 함께 있는 관속의 부녀자들의 연회에 모든 부인들이 성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오직 주신의 부인

만 나무비녀에 베치마 차림으로 참석하니 마치 촌부인 같았다. 도리어 성장한 부인들이 서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후부터 담박한 의복으로 같이 입었다 한다.

형악(衡岳)이 경양(慶陽)을 맡아 다스릴 때에 여러 부인들이 모여 연회를 가졌다. 모든 부인들이 금불이와 비단으로 찬란하게 치장했는데, 오직 공의 부인만 나무비녀에 베옷을 입었을 뿐이었다. 잔치가 끝난 후 부인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공이 “부인은 어디에 앉아 있었소?”라고 물었다. 부인이 윗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대답하자, 공은 “이미 윗자리에 앉았으면서 또 의복까지 화려하게 꾸미기를 바란단 말이요? 부귀를 겸할 수가 있겠오?”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한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집을 바로잡은 것이다.

나의 지위가 높아지면 아내와 자식부터 나를 속이고 저버리게 된다. 남편을 공경하지 않는 아내가 없으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없는데, 어찌 속이고 저버릴 마음이 있겠는가? 그러나 도리를 아는 사람이 적어서 혹은 안면에 끌리기도 하고, 혹은 재물에 유혹되기도 하므로, 청탁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아녀자의 인(仁)이다. 살을 찌르는 듯한 통절한 참소로 어떤 아전을 제거하라 하기도 하고, 혹은 쓸 만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천거하기도 하고, 혹은 ‘갑’에 대한 판결은 여론이 원통하다고 하고, 혹은 ‘을’의 옥사(獄事)는 원님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등, 아래에 있는 간사한 자들이 온갖 계교로 이간질을 한다. 그러면

어진 아내와 순진한 아이들은 그들의 술수에 빠져서, 스스로는 공정하게 아뢰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남의 말을 들을 때 금방 신임하지 말고 천천히 사리를 따져 만약 그의 말이 과연 충직함에서 나온 것이라면 곁으로 드러내지 말고 잠자코 그 일을 선처해야 한다. 만약 그의 말이 간사한 자들의 꾀에서 나온 것이라면 경위를 캐내고 내막을 들추어내되, 본 사건 외에 청탁한 죄까지 더해 반드시 법에 명백히 비취 크게 징계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들의 말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아내와 자식도 그런데 하물며 그 나머지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김상헌(金尙憲)은 벼슬살이를 청렴하게 하였다. 어느 관리가 자기 부인이 뇌물을 받아 비방을 듣는 것을 걱정하자, 그는 “부인의 소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 비방이 그칠 것이다”라고 일러주었다. 그 관리가 크게 깨닫고 그 말대로 하자, 그 부인이 항상 김상헌을 욕하기를, “저 늙은이가 저만 청백리가 되었으면 그만이지 왜 남까지 본받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라고 하였다.

4. 청탁을 물리침[屏客]

관아에 책객(冊客)을 두어서는 안된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을 두어 안채의 일도 살피도록 해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 책객(개인비서)이 회계를 맡아 날마다 쓰는 쌀과 소금 등의 장부를 살피는 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관아의 회계에는 공적으로 사용한 것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모두 기입되고, 많은 아전과 하인이 관계되어 있는데, 지위도 명분도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모두 살펴보게 하여 날마다 재정을 맡은 아전 및 관노들과 함께 ‘많다, 적다, 거짓이다, 사실이다’ 하니 어찌 사리에 맞는 것이겠는가.

서기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 무릇 수령의 집안일은 가노(家老)를 한 사람 두어 아래와 위를 이어주고 안팎을 통하게 해야 한다. 잔일들을 수령이 직접 관장하면 체모가 손상되는 일이 있고, 자제들이 관장하면 비루해지기 때문에 가노는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무릇 수령은 자기 고을 사람과 이웃 고을 사람을 관아에 끌어들여 만나서는 안된다. 관부(官府) 안은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요즘에는 수령이 그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안부를 묻는 풍속이 있다. 토호와 간사한 백성이 조정의 고관들과 결탁하고 있어, 수령이 부임인사를 드리는 날에 조정의 고관들이 그들을 찾아가 인사하라 하고 일마다 비호해주도록 부탁한다. 옛날에 참관 유의(柳誼)가 홍주목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청탁을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다. 내가 너 무 용통성이 없다고 하자, 유공은 “주상께서 이미 홍주 백성을 나 같은 신하에게 맡겨서 그들을 구휼하고 비호해주도록 하셨으니, 조정에 있는 고관의 부탁이 비록 중하기는 하지만 어찌하여 이를 넘어설 수가 있겠소. 만일 내가 편벽되어 한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비호하면, 이는 군왕의 명

령을 어기고 한 사람의 사사로운 명령을 받드는 것이니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하겠소"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깊이 감복하여 더 말하지 못했다. 모름지기 토호를 찾아 인사하는 것은 경솔히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만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에는 부임하고 3개월 정도 찬찬히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고, 힘으로 백성을 강압하거나 간사한 행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찾아가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물 목록의 끝에는 "결코 답례하지 말라"고 써야 한다.

조정에서 벼슬을 살다가 물러난 자는 비록 쇠잔해진 음관(蔭官)과 무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찾아가 인사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뜻이다. 그들 중에 혹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거절해서는 안된다. 서로 만나는 날에는 "뜻이 두텁지 않은 비는 아니나, 예에는 한계가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공과 약속하고자 합니다. 의논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요, 모일 일이 있으면 내가 초청하여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섭섭하시더라도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자는 것이니 이해해주십시오"라고 약속을 하라. 그리고는 아전들에게 이 약속을 단단히 알려주어야 한다.

고을 안에는 반드시 문사(文士)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어서 시(詩)와 부(賦)를 쓰는 걸로 수령과 교분을 맺고, 그것을 인연 삼아 농간을 부리니,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 만나서는 안된다. 또 풍수(風水), 사주풀이, 관상, 점(占), 한자(漢字)를 집게 해 자획을 풀어 길흉을 점치는 파자(破字) 등 여러 가지 요사스럽고 허랑한 술수를 가진 자가 수령과 인연을 맺으면, 작게는 정사를 문란케 하고 크게는 화를 입게 할 것이니 마땅히 천리 밖으로 물리치고 그림자조차 가까이해서는 안된다.

오직 의원만은 물리치기가 어렵다. 내가 의술을 모르고 그 사람이 정통하면 필요할 때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마땅히 심분 조심하여 삼가고, 보수는 후하게 주되 입을 열어 청탁하게 해서는 안된다.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거둬 단단히 단속하여, 남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가 본 고을이나 이웃 고을에 살면 한번은 초청하여 보고 한번은 가서 보며, 때때로 선물을 보내되, "비록 날마다 보고 싶지만 예에는 한계가 있으니, 초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오지 말기 바란다. 편지 왕래도 역시 의심과 비방을 살 터이니, 만일 질병이나 우환이 있어서 서로 알려야 할 경우에만 몇자의 편지를 써서 풀로 봉하지 말고 직접 예리(禮吏)에게 주어 공개리에 보내도록 하라"고 약속하라.

늘 보면 친척들이 때를 틈타 청탁을 하여 인심을 잃는 일이 거둬 쌓이면, 수령이 떠난 후에는 강은 흐르되 들은 그대로 남는 것처럼 못사람들의 분노가 여기저기서 일어나 잘 지내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무릇 조정의 고관이 사사로이 편지하여 청탁하는 것을 들어줘서는 안된다.

포증(包拯)이 개봉부(開封府)를 맡았을 때 사람됨이 굳세고 엄하여 사사로이 청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사로운 청탁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는 염라대왕과 포증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유익이 홍주목사로 있을 때 나는 금정역(金井驛) 찰방(察訪)으로 있었는데, 내가 편지를 띄워 공적인 일을 의논하고자 하였으나 답신이 오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홍주에 가서 만난 자리에서 “왜 답장을 하지 않았소?”라고 물어보자, 그는 “나는 수령으로 있을 때에는 원래 편지를 뜯어보지 않소”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시중을 드는 아이에게 편지함을 쏟으라고 명령하였는데, 조정의 귀인들이 보낸 모든 편지가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내가 “그건 참으로 그럴 만하지만, 내 편지는 공무였는데 어찌 뜯어보지 않았소?”라고 묻자, 그는 “만일 공무였다면 왜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소?”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마침 그것이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었소”라고 하자, 그는 “그렇다면 왜 비밀히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소?”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가 사사로운 청탁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와 같았다.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즉시 영접하여 후하게 대접해 보내는 게 마땅하다.

선인(先人)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은 잘 대접하기가 정말 어렵다. 진실로 청렴한 선비와 고상한 벼은 비록 지극히 가난하고 궁할지라도 친구나 친척을 찾아 관부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찾아오는 자는 대개 조심성도 없고 어리석거나 구차하고 비루한 사

람들이니, 혹은 그 얼굴이 밍살스럽고 이야기조차 흥미가 없으며, 혹은 무리한 일을 청탁하고 요구가 끝이 없으며, 혹은 닳아빠진 신발을 신고 남루한 옷차림에 이가 득실거리며, 혹은 내가 일찍이 액운을 만나 궁했을 때에는 전혀 돌보거나 불쌍하게 생각지도 않던 자들이다. 형세가 좋아지니까 아침하며 붙는 그 정상이 밍살스러워서 내가 온화하고 흠족히 대접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다.”

대개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짓는 것과 같다. 좋은 제목을 가지고 잘 짓는 것은 잘한다고 일컬을 게 없으며, 반드시 어려운 제목으로 묵묵히 생각하여 남달리 문장에 운율을 주고, 번쩍 빛이 나게 하며, 쟁그렁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 고수(高手)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땅히 측은히 여겨 사랑해주고, 반갑게 영접하며, 얼굴빛도 유쾌하게 하며, 웃음과 말씨도 화평하고 즐겁게 하고, 따뜻한 방에 재우고 풍성하게 음식을 먹고 새 옷을 주되, 돌아갈 때에는 그의 돈주머니도 넉넉히 채워주어 낭패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옛날에 참판 이기양(李基讓)이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잘 대우하여 달포도 못되어 칭찬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가 화를 입자 눈물짓는 자가 유독 많았으니 이런 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관청에 잡인의 출입을 엄하게 금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중문(重門)을 활짝 열어놓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데, 이는 덕스럽긴 하지만 정사는 할 줄 모르는 것이다. 내 직책은 목민이지 손님접대가 아닌데, 생전에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어찌 다 만나

볼 수 있겠는가? 문지기에게 “무릇 손님이 문 밖에 이르면 우선 따뜻한 말로 기다리게 하고 나서, 가만히 보고하여 처분을 듣도록 하라”고 다짐 해두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사사로이 관부에 출입하는 자는 곤장이 100대이다. 오직 아버지·아들·사위·형·아우만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생각전대 국가의 금령이 이와 같으니 무릇 몸을 닦고 행실을 돈독히 하는 선비는 반드시 이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5. 씹씹이를 절약함[節用]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씹씹이를 절약하는 것은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이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겨우 한 고을을 얻기만 하면 교만방자하고 사치해져 절제하는 바 없이 손닿는 대로 합부로 써버리고, 부채(負債)가 많아지면 반드시 탐욕스럽게 된다. 탐욕을 채우려면 아전과 더불어 일을 꾸미게 되고, 아전과 더불어 일을 꾸미면 그 이득을 나누어야 되며, 그 이득을 나누게 되면 백성의 고향이 마르게 된다. 그러므로 씹씹이를 절약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안정복(安鼎福)은 이렇게 말하였다. “재물을 낭비하는 근본은 항상 처

침을 데리고 부임하고 자제를 왕래하게 한다든가, 권세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을 맞이하고 보내며 결탁한다든가, 기구를 제작한다든가, 진귀하고 기이한 보물들을 수집한다든가 하는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한 것을 법도로 삼아야 한다. 조금만 법도를 넘어도 씹씹이에 절도가 없어져버린다.

의복은 성글고 검소한 것을 입도록 힘써야 한다.

아침저녁의 식사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 외에 네 접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접시란 구운 고기 한 접시, 마른 고기 한 접시, 절인 나물 한 접시, 젓갈 한 접시이니, 이보다 더해서는 안 된다.

요즈음 수령들은 온갖 일에는 다 체모를 잃으면서도, 오직 음식만큼은 망령되이 스스로를 존대하여 옛법을 따른다고 한다. 크고 작은 두 상에 홍백(紅白)의 밥을 함께 차려놓고, 안채와 바깥사랑의 두 군데 반찬에는 수륙(水陸)의 진미를 갖추어놓고서 수령의 체모란 마땅히 이래야 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먹고 남은 음식은 모두 종과 기녀의 차지가 된다. 내 직분을 제대로 못하면 나쁜 음식일지라도 오히려 벼슬자리만 차지하고 녹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에는 힘쓰지 않고 단지 음식만 탐을 내니 어찌 가소롭지 않은가? 합부로 낭비하면 재정이 딸리게 되고, 재정이 딸리면 백성을 착취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종과 기생만 챙기고 백성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백성을 착취해 기생을 살찌우니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또 처음에 왔을 때에는 검소하게 하다가 몇달 지

나지 않아 음식 가짓수를 늘리는 자가 많다. 그러면 아전과 백성들이 이 사실을 서로 전하면서 수령의 한결같지 않음을 비웃을 것이다. 수령인들 창피하지 않겠는가?

진서산(眞西山)은 나물을 논하면서 “백성에게는 하루라도 굶주린 기색이 있어서는 안되고, 사대부는 하루라도 나물맛을 몰라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정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의 얼굴빛이 나물색을 띠게 되는 것은 바로 사대부가 나물맛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말단직에서 공경대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벼슬아치들이 나물 뿌리를 씹을 줄 알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도 반드시 알 것이니,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나물빛을 떨까 근심하겠는가?”

유정원(柳正源)은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갈 때는 언제나 채찍 하나만 가지고 길을 나섰고, 의복이나 가구는 조금도 불어나지 않았다. 자인(慈仁)에서 교체되어 집에 돌아와 있는데, 관아에 남아 있던 그의 아들이 헌 농작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속이 비면 쉽게 찌그러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농작 속에 짚을 채워넣었다. 고을 살이를 그만두고 왔기 때문에 마을 아낙네들이 몰려와 다투어 농작 속을 보려고 하였는데, 짚단임을 알고는 모두 한바탕 크게 웃고 헤어졌다.

제사와 손님맞이는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마땅히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 쇠잔한 작은 고을은 법도보다 줄여야 한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은 이렇게 말하였다. “선친께서는 여러 고을 관관

을 역임하면서 손님이 오면 늘 술을 대접했는데, 세 순배 혹은 다섯 순배를 하되 일곱 순배를 넘는 일은 없었다. 술은 저자에서 사왔고, 과일은 배·밤·대추·감뿐이었고, 안주는 건포·젓·나물국뿐이었으며, 그릇은 자기(磁器)와 칠기(漆器)를 사용하였다. 당시의 사대부는 모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르다고 여기지 않았다. 모임은 잦았으며 예는 은근하였고, 물건은 박하였으나 정은 두터웠다.”

무릇 아전과 종이 바치는 물건으로 그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마땅히 더욱 절약해야 한다.

이득준(李得駿)이 강진현감(康津縣監)으로 있을 때 안채 앞뒤에 채소밭을 크게 가꾸어 안채의 노비들을 시켜 거름 주고 김매게 하였다. 그 채소밭이 기름져 채소가 잘 자라 사시장철 채소가 끊이지 않아 원노(園奴)가 바쳐야 할 것을 모두 감해주었고, 또 먹고도 남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칭송하는 것이 전해져 미담이 되었다.

정선은 말하였다. “옛날에 어떤 현령이 있었는데 매우 청렴하고 아주 깨끗하였다. 서울에서 공적인 일로 편지가 왔는데, 관용(官用)의 촛불을 켜고 봉한 편지를 뜯어서 보다 속에 집안의 편지가 들어있자, 곧 그 촛불을 끄게 하고 자기 초를 꺼내어 켜고서 편지를 읽었다. 읽기를 마친 후에야 다시 관용의 촛불을 켰다. 비록 잘못을 고치는 것이 지나치게 심하기는 하지만 취하여 풍속을 바로잡을 만하다.”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지만, 공적인 물건과 돈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현명한 수령이다.

고을마다 반드시 공용의 재정이 있어 여러 창고가 설립되어 있다. 처음에는 공용이었지만, 설립한 지 오래 되면서 점차 사용으로 지출되어 그릇된 관례가 겹겹이 생기고 절제없이 낭비하게 되었다. 본래 공용이었기 때문에 수령은 끝내 살피지 못하고, 창고를 감독하는 아전과 종은 갖가지로 속여 오로지 몰래 훔쳐 먹으려고만 한다. 창고가 비게 되면 또 거둬 거두어들이는바, 이는 여러 도의 공통된 폐단이다.

수령은 한 고을을 주재하는 사람이니 한 고을의 일 가운데 관장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책임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있으니 어찌 핑계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날마다 지출하는 내용의 기록은 마땅히 조목조목 살펴야 하며, 아무리 작은 지출이라도 방심하여 지나쳐서는 안된다. 관아 주방의 지출기와 관속들의 일용잡비 지출기는 세밀하게 살피면 육을 먹고, 여러 창고의 지출기와 향교의 지출기는 세밀하게 살피면 위엄이 서게 되는바, 이는 그 공(公)과 사(私)의 차이 때문이다. 제정한 법도가 본래 치밀하지 못하면 조목을 고치거나 그릇된 관례를 폐지하거나 허점을 보완하여 영구히 폐단을 없게 해야 한다.

갈려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부(記付)가 있어야 한다. 기부의 액수는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한다.

관부에 전해 내려오는 돈과 곡식 등 여러 재물은 통틀어 장부에 기록되는데, 이를 중기(重記)라고 한다. 갈려 돌아갈 때에는 쓰고 남은 것을 대략 중기에 기재하는데, 이를 기부라고 한다. 평상시에 유의하지 않으면 급할 때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초하루 보름의 회계일마다 관부에서 쓰는 여러 물품을 약간 남겨두었다가 갑작스러운 교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치현결』에 말하고 있다. “관아 주방에서 쓰이는 것은 이미 모두 달로 쪼개어 배당하였으니 당겨쓰지만 않으면 걱정할 것은 없다. 나머지의 돈과 곡식은 항상 뒷날을 염려하여 낭비하지 않아야 끝에 가서 걱정이 없다.”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연못에 물이 괴어 있음은 장차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셔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절약하는 사람은 능히 베풀 수 있고, 절약하지 못하는 사람은 베풀지 못하게 마련이다. 기생을 불러 가야금 타고 피리 불게 하고, 비단 옷 입고 높은 말에 좋은 안장을 쓰며, 상관에게 아첨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뇌물로 바치는 돈이 하루에 수만 전을 넘고 1년에는 억만 전이나 되는데 어찌 친척들에게 베풀 수 있겠는가? 아껴 쓰는 일은 베풀기의 근본이

다. 내가 귀양살이하면서 수령들을 보면, 나를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자는 옷차림이 반드시 검소했고, 나를 돌보지 않은 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돌며 음탕한 것을 즐겼다.

가난한 친구와 궁색한 친척은 힘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형제와 숙질(叔姪) 등 한 집안 사람들은 비록 입지에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가난하여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식구의 수를 헤아려 달마다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 가난함이 심하지 않으면 간혹 물건을 보내준다.

가난한 친구가 와서 도움을 청하면 후하게 대접하고 도와주되, 돌아가는 노자도 헤아려 집에 도착해서도 조금 남은 만큼 주는 것이 좋다.

이창정(李昌庭)이 순천부사(順天府使)로 있을 때 그와 이름도 같고 관품(官品)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딸의 혼수(婚需)를 도움받으러 왔으나 이창정을 보니 딴 사람이라 실망하여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창정이 자리를 권하고 천천히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 사람이 실토했다. 이창정은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하고 더욱 후하게 대접하고, 혼수를 준비해주되 한 가지도 빠지지 않게 하였다. 그 사람이 “비록 내 친구가 마련해준다 하더라도 이같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감사하며 말했다.

내 녹봉에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관가의 재물을

빼내어 사사로이 남을 돕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만약 공채(公債)가 많으면 마땅히 그 상황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두루 알려, 그들로 하여금 기다렸다가 여력이 생겼을 때에 와서 요구하게 해야 한다. 함부로 객기를 부려서 관의 공간을 탕진하여 아전들이 목을 매고 관노(官奴)가 도망치며 그 해독이 고을 전체에 미치게 되면, 베풀었다고 해서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친구 윤의심(尹畏心)은 해남현감인 아우가 공채가 아직 많은데도 제수(祭需)를 보내오자, “아래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은 차마 할 수 없다”고 하며 물리쳤는데, 이것은 격언(格言)이다. 제사도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자기의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의 농토에서 거둔 수확을 풀어 친척들을 도와준다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항상 “벼슬살이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남는 것은 내 몫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벼슬 사는 동안 자기의 농토에서 거둔 수확을 집에 가져다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팔아서 그것으로 농토를 더욱 넓히는 것을 말한다. 병법(兵法)에 “군량을 적에게서 마련하고 아군의 식량을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관리들의 마음이 백성을 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자기의 농토에서 나온 수확을 일가친척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관가의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더욱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집(李穡)이 여러 번 군현(郡縣)을 맡았는데, 벼슬에 있을 때는 동생인 구(構)에게 대신 집안일을 맡겼다. 흉년이 드는 해마다 이집이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어 “집안의 저축을 먼저 여러 친족에게 나누어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하인들과 이웃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였다. 흉년 든 틈을 타 논밭을 더 늘리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제 몸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마 저들을 굶주리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경상도의 하양(河陽)에서 돌아와서는 그동안 하인이 장리(長利) 놓은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그 하인에게 곤장을 때렸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객지생활이 곤궁하면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어진 사람이 힘쓸 일이다.

박대하(朴大夏)가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있을 때 정온(鄭蘊)이 바른말을 하다가 제주도로 귀양가면서 나주를 지나갔다. 박대하는 정온과 하루의 사귄도 없었지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노자를 후하게 주니 정온이 감탄하고 갔다.

전란(戰亂)을 당하여 몹시 어수선했을 때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홍이일(洪履一)이 대구판관(大丘判官)일 때 마침 병자호란을 당하였는데, 조령(鳥嶺) 이남은 전란이 미치지 않아서 피난온 사대부들이 많았다.

그는 이들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모두 과분한 대우에 기뻐하였다. 그는 “이런 때를 당하여 한 고을의 풍요를 독차지하여 어찌 제 혼자만 넉넉하게 살면서 다른 이의 굶고 굶주림을 그냥 볼 수 있겠는가? 하물며 사대부들이 살 곳을 잃고 유랑하는데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어느날 관찰사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정사를 맑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손들은 어찌할 것인가?”라고 농담을 하자, 그는 웃으면서 “처신함에 있어서 이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를 자손들에게 남겨준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권문세가를 후하게 섬겨서는 안된다.

권문세가에 선물 보내기를 후하게 해서는 안된다.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의뢰하여 서로 잘 지내는 사람에게는 때때로 선물을 보내되 먹는 것 몇가지를 넘어서는 안되며, 그밖에 모피·인삼·비단 같은 값진 물건은 결코 바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재상으로서 청렴하고 명석하며 식견 있는 사람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낸 사람을 비루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여기며, 혹 임금 앞에 가서 그 사실을 아뢰어 벌주기를 청할 것이다. 이는 재물을 잃고 망신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만약 그 재상이 뇌물을 즐기며 받고 이로 말미암아 벼슬자리를 끌어올려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래지 않아 패망할 것이요, 그의 사인(私人)으로 지목당하여 크게 연루자가 될 것이고, 작게는 앞길이 막히게 될 것이 필연의 이치이다. 이렇듯 저렇듯 해만 있고 이익은 없을 터이니 어찌 구태여 이런 일을 하겠는가.

정봉(鄭鵬)이 청송부사(靑松府使)로 있을 때 재상 성희안(成希顔)이 잣과 꿀을 요구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꼭대기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는데, 수령 된 사람이 어떻게 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성희안이 부끄럽게 여기고 사과하였다.

조숙(趙涑)이 임피현령(臨陂縣令)으로 있을 때 대궐질로 방석을 만들어 채유후(蔡裕後)에게 보내어 그의 초가집에서 쓰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채유후의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며 “기와집에는 이 방석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보내지 않았다. 채유후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럽게 여기며 감탄하였다.

● 제3부 ●

봉공(奉公) 6조



1. 교화(教化)를 펼침
2. 법도를 지킴
3. 예의있는 교제
4. 보고서
5. 공물 바치기
6. 차출되는 일

정봉(鄭鵬)이 청송부사(靑松府使)로 있을 때 재상 성희안(成希顔)이 잣과 꿀을 요구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꼭대기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는데, 수령 된 사람이 어떻게 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성희안이 부끄럽게 여기고 사과하였다.

조속(趙涑)이 임피현령(臨陂縣令)으로 있을 때 대궐질로 방석을 만들어 채유후(蔡裕後)에게 보내어 그의 초가집에서 쓰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채유후의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며 “기와집에는 이 방석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보내지 않았다. 채유후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럽게 여기며 감탄하였다.

● 제3부 ●

봉공(奉公) 6조



1. 교화(敎化)를 펼침
2. 법도를 지킴
3. 예의있는 교제
4. 보고서
5. 공물 바치기
6. 차출되는 일



1. 교화(教化)를 펼침[宣化]

군수와 현령은 본래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흐르게 하고[丞流],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퍼는 것[宣化]'이 직분인데, 오늘날에는 오직 감사에게만이 책임이 있다고 하니 잘못된 것이다.

살피건대 선화와 승류는 수령의 책임이거늘 오늘날은 오직 감사의 관청에만 '선화당(宣化堂)'이란 현판을 써붙여놓으니, 수령들은 이 현판을 보고 선화와 승류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들은 부세(賦稅)를 독촉하여 상급관청의 꾸지람을 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 어찌 슬프고 답답하지 아니한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신하는 임금의 팔과 다리와 귀와 눈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임금이 힘을 사방으로 퍼려고 하니, 군수와 현령 된 자들

이 따라서 사방에 힘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조정의 은덕을 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을 사모하고 받들게 하는 것을 가리켜 민목(民牧)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수령 된 자는 학정을 해서 원망이 조정으로 돌아오게 한다. 부세의 징수를 연기하라는 조서(詔書)가 내렸으나 감추어 반포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굶어내어 스스로 치부하기 위한 거래를 자행하며, 부채를 탕감하라는 조서가 내렸으나 감추어 반포하지 않고 아전들과 작당하고 농간하여 그들의 요리(料理)에 이바지하며, 병자를 구호하고 시체를 묻어주라는 명령도, 결혼 못한 자의 혼인을 권하고 부모 없는 어린이를 거두어주라는 명령도 감추어 반포하지 아니한다. 수해를 입었을 때나 가뭄이 들었을 때 조정에서는 세금을 탕감해주었으나 여전히 거둬 가로채 먹고는 “조정에서 수해(혹은 가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며, 많은 굶주린 백성을 구호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조정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한다”고 하며, 굶사등이는 원래 강제노역이 면제되어 있음에도 이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하면 “조정의 명령이 지엄하니 난들 어찌하겠는가”라고 하며, 무고한 백성을 가두고 죄를 면해준다며 돈을 바치라 하면서 “조정의 금령이 본래 엄한데 네가 어찌 죄를 범했는가”라고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을 원망하며 아우성치게 한다. 아, 이래서야 되겠는가? 수령은 마땅히 백성을 대할 때마다 오직 조정의 은덕을 펴는 것을 제일의 직분으로 삼는 것이 옳다.

2. 법도를 지킴[守法]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신하 된 자로서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책상 위에 『대명률(大明律)』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놓아두고 항상 펼쳐보아 그 조문과 사례를 갖추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지키고 명령을 시행하고 소송을 판결하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무릇 법의 조항에 금지된 것은 조금이라도 어겨서는 안되니, 비록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율의 관례라 할지라도 국법에 현저히 위반되고 벗어난 것이면 어겨서는 안된다.

확연히 지킬 것을 지켜 흔들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아니하면, 곧 인욕(人慾)이 물러나고 천리(天理)가 흘러 행해질 것이다.

허조(許稠)가 전주판관(全州判官)으로 있으면서 맑은 절개를 지키며 굳세고 밝게 일을 처리하였는데, ‘非法斷事 皇天降罰(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여덟 글자를 작은 현판에 써서 동헌에 걸어놓고 있었다.

무릇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刑律)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라의 법전을 찾아봐서 만일 법률을 어기는 일이라면 결코 시행해서는 안된다. 만약 전임자가 법을 어긴 일이 전해져 내려와 나에게 뒤집어씌워진 것이 있다면, 글을 주고받아 바로잡을 길을 강구하되, 저쪽이 움직이지 않거든 마땅히 감영(監營)에 보고하고, 그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

언제나 일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마음속으로 '감사가 이를 들으면 나를 폄하하지 아니할까, 어사가 이를 들으면 나를 탄핵하지나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러한 근심이 없으면 행하는 것이 좋다.

한결같이 끈게 법만 지키다 보면 때로는 일 처리에 너무 구애받을 수도 있다. 다소 넘나들이 있더라도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옛사람도 혹 변통하는 수가 있었다. 요컨대 자기의 마음이 천리의 공평함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에서 나왔다면 조금도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법을 어겨 죄를 받는 날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법을 어긴 것이 반드시 백성을 이롭고 편하게 한 일이니, 이같은 경우는 다소 넘나들이 있을 수 있다.

이익에 유혹되어서도 안되고, 위세에 굴복해서도 안되는 것이 수령의 도리이다. 비록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명준(李命俊)이 고산찰방(高山察訪)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 역(驛)이 함경도의 요지에 있어 역마(驛馬)를 타는 자들이 법의 한도를 넘

어서 지나치게 요구하였으므로 역졸들이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률대로 집행하여 굴하지 않았다. 감사가 와도 반드시 마패(馬牌)대로만 역마를 지급하자, 감사가 노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투다가 결국 조정의 명령을 요청하니, 조정에서는 그가 옳고 감사가 그르다고 하였다. 오래된 폐단은 곧 고쳐졌으나 그는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버렸다.

법으로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변경하지 말고, 관례로서 사리에 맞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버리지 않도록 한다.

주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사를 하되 큰 이해관계가 없으면 반드시 뜯어고치기를 의논할 것은 없다. 뜯어고치기를 의논하면, 고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반드시 시끄럽게 소요가 일어나 끝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조극선(趙克善)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 있을 때에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관복을 입고 정사를 보았는데, 요란스럽게 변경하고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무릇 어떤 일을 할 적에는 반드시 점차로 해야 한다. 부임하자마자 곧 일체의 폐단을 제거해놓고 그 뒤를 잘 이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시작은 있으나 마무리가 없게 될 우려가 있게 된다. 마땅히 먼저 몹시 지나친 것부터 제거하여 점차 모든 폐단이 다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옛사람들이 요란스럽게 변경하는 일을 경계한 것은 지킬 만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현에서 쓰고 있

는 것은 국법이 아니고, 모든 부역(賦役)과 징렴(徵斂)이 다 아전들의 방자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마땅히 급히 개혁할 일이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읍례(邑例)란 한 고을의 법이니, 그중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하여 지키면 된다.

각 고을의 여러 창고에는 모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를 립하여 절목(節目)이라 한다. 처음 절목을 정할 때에도 잘되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온 수령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모두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들었으니, 거칠고 잡되고 구차하고 고루하여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다. 이를 핑계로 그 절목을 폐지하고 임의로 새로운 영(令)을 시행하니, 무릇 백성을 착취하는 절목은 해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늘어나기 마련이다.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취임한 지 몇달이 지났거든 여러 창고의 절목들을 조목조목 조사하고 물어 그 이롭고 해로움을 알아내어, 그중에서 사리에 맞는 것은 표시하여 드러내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은 고쳐야 한다. 물건 값이 예전에는 싼으나 이제 와서 오른 것은 의논하여 값을 올려주고, 예전에는 비쌌으나 이제 와서 내린 것은 그대로 후하게 해주며, 민호(民戶)가 예전에는 번성했으나 이제 와서 쇠잔해진 경우에는 의논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며, 예전에는 적었으나 이제는 많아진 경우에는 옮겨서 고르게 해야 한다. 사리에 맞지 않으면서 수령만 이롭게 하는 것은 고쳐 없애고, 법에 없는데도 여러 가지로 거두는 것은 한도를 정해야 한

다. 정밀히 생각하고 살피며 널리 물어서 용단을 내리되, 뒷날의 폐단을 고려해서 막아버리고, 못사람의 뜻을 좇아 법을 확고하게 세우고 공평하게 지키면,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간 후에 뒷사람이 지키는지 여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살피서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3. 예의있는 교제(禮際)

예의있는 교제는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니, 공손함이 예의에 알맞아야 치욕을 피할 수 있다.

존비(尊卑)의 등급이 있고 상하(上下)의 표식이 있는 것이 옛날의 원칙이다. 수레와 복장이 서로 다르고 깃발의 장식에 채색을 다르게 함은 그 분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위직은 마땅히 본분(本分)을 지켜 상위직을 섬겨야 한다. 나는 문관(文官)이고 상대가 무관(武官)이라 하여 팔시해서는 안되고, 내가 세력이 크고 상대가 세력이 약하다 하여 교만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내가 잘났고 그는 어리석다 하여 그를 우둔하다고 말해서는 안되며, 나는 나이가 많고 그는 젊다 하여 그를 딱한 듯이 대해서는 안된다. 엄숙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온순하여 감히 예(禮)를 잃지 않으며, 화평하고 통달하여 서로 끼이고 막힘이 없게 하면, 정과 뜻이 서로 공감하게 될 것이다. 백성을 위한 일을 할 때 상대가 자애롭지 않으면 그 사람의 뜻에 굽혀 좇아서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니, 수령이 비록 감사와 오랜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

후한의 소장(蘇章)이 기주자사(冀州刺史)가 되었을 때 그의 친구가 청하태수(清河太守)로 있었다. 소장이 관할 지역을 순행하면서 그 친구의 부정을 다루게 되었다. 소장이 먼저 주연을 베풀어 태수를 극히 환대하니, 태수가 기뻐하며, “남들은 모두 한 하늘만 이고 있는데 나는 홀로 두 하늘을 이고 있다”고 하였다. 소장은 “오늘 저녁에 내가 옛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사사로운 정이요, 내일 기주자사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공법(公法)이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그의 죄를 들어 바르게 처리하니 고을 경내가 숙연하였다.

심지원(沈之源)이 홍주목사(洪州牧使)로 있을 때 판서 임담(林潭)이 충청감사가 되어 순행하다 홍주에 왔다. 심지원은 평소의 친구라 접대를 자못 간소하게 하였더니, 임감사가 홍주 아전을 매질하면서 “너의 수령이 비록 나와 교분이 가까우나 상관과 하관 사이의 체모는 엄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너의 수령이 실수를 하였으니 네가 대신 매를 맞아라”라고 말했다. 심지원은 늘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체모를 잃은 내가, 아전에게 매질한 것을 또 노여워하면 법을 멸시하는 것이므로 끝내 개의치 않았다. 임판서가 나를 깨우친 점이 실로 많다”고 하였다.

각 영문(營門)의 판관(判官)은 감영에 대하여 정성스럽고 공경하며 예를 극진하게 할 것이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요즘 사람들은 망령되어 스스로 교만하여 몸을 굽혀 윗사람 섬기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사단을 일으켜 감영과 다투는데, 이는 이치에 순응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다투어도 좋다.

판서 권대재(權大載)는 몸가짐이 검소하고 벼슬살이를 청렴하고 간소하게 하였다. 일찍이 공주(公州)의 판관이 되었을 때, 감사가 쓰는 물품도 모두 절약하여 남용하지 않게 하였다. 감영에서 일하는 무리들이 사단을 일으키고자 모의하여 배당해준 땀감을 빼들려 감사의 방구들이 항상 냉랭하였다. 감사가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이 “땀감이 원래 적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감사가 판관을 꾸짖으니, 권판관이 “감히 감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고, 그날 몸소 군불넣기를 감독하여 정해진 분량의 땀감을 모두 때니 방이 화로같이 뜨거웠다. 감사가 견디지 못하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하며 사과하자, 그제서야 물러나왔다.

상급관청이 아전과 군교를 조사하면, 비록 그 일이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수령은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 잘못이 있어서 상급관청이 조사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본래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상급관청이 까닭없이 사단을 일으켜서 함부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덮어씌우더라도, 나의 지위가 낮으니 역시 순종할 따름이다. 만약 상급관청의 뜻이 과오에서 나왔고 악의가 아닌 경우라면 죄인을 호송하는 문서에 그 사정을 자세하고 간곡하게 해명하고 관대한 용서를 빌어서, 나의 아전과 군교가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충직하고 겸손한 도리이다. 그런데 감사의 본뜻에 악의가 있어서 말로 다룰 수 없는 경우는 수형리(首刑吏)의 문서로서 죄수를 호송하고 동시에 사직서를 써서 같이 제출케 한다. 감사가 굽혀서 사과하면 달갑지 않지만 정사를 볼 것이나, 만약 계속 무례하면 사직서를 세번 제출하여 거취를 결정한다.

감사가 만일 겉으로는 용서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오히려 노여움을 품고 있다가 장차 고과(考課)할 때에 가장 낮은 평점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인부(印符)를 끌러 예리(禮吏)를 시켜 감영에 가서 바치도록 하고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구차스럽게 쭈그리고 앉아서 욕됨을 스스로 취해서는 안된다.

상관의 명령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굽히지 말고 꾀꿌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명나라의 조예(趙豫)가 송강부(松江府)를 맡고 있는데, 청군어사(淸軍御史) 이립(李立)이 와서 군대의 수를 늘리는 데만 몰두하여 백성들을 마구 동원하였다. 이에 조금이라도 항변하면 독하게 곤장을 치니, 인심이 크게 소란해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 또한 소금 생산을 맡은 관리가 소금 굽는 인부들도 끌어모으니 백성들에게 크게 해가 되었다. 조예는 글을 올려 이 모든 일들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살피건대 어사나 상관의 나쁜 정사에 관해 수령이 상부에 보고하여 적극적으로 논할 수 있었으니, 명나라의 이 법은 매우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

라는 체통만을 따져, 상관이 함부로 불법을 저질러도 수령이 감히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여 민생의 초췌함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박환(朴煥)이 금구현령(金溝縣令)으로 있을 때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을 찾아 보내도록 요구하였는데, 조정에서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각 군읍에 지령을 내렸다. 모든 군읍에서는 중국 사람을 살살이 찾아내지 못하면 중한 견책을 받을까 두려워 수색하느라고 어수선했다. 박환은 탄식하면서 “나는 허리에 찬 관인(官印)의 끈은 풀 수 있으나 이것만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 고을에는 찾아낼 중국 사람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 고을에 사는 중국 사람들만은 무사할 수 있었다. 이 일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의리에 탄복하였다.

예(禮)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되고 의(義)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되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아야 군자라고 한다.

사대부의 벼슬살이하는 법은 언제라도 벼슬을 버린다는 의미로 ‘버릴 기(棄) 한 자를 벽에 써붙이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행동에 장애가 있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거나, 상관이 무례하거나, 내 뜻이 행해지지 않으면 벼슬을 버려야 한다. 감사가 내가 언제든지 벼슬을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며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를 잃을까 저어하여 황송하고 두려워하는 말씨와 표정이 드러나면, 상관이 나를 업신여겨 계속 독촉만 하게 될 것이니 오히려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필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상관과 하관의 서열이 본래 엄한 것이니, 비록 사의(辭意)를 표명하여 관인을 던지고 결연히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말씨와 태도는 마땅히 온순하고 겸손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울분을 터뜨리지 않아야 비로소 예에 맞다고 할 수 있다.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예의있게 대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이웃 고을 수령과는 서로 형제의 우의가 있으니, 저쪽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틀어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양나라 대부 송취(宋綬)가 초나라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곳의 현령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양쪽에서 모두 오이를 심었는데 양나라 사람은 힘써 자주 물을 주곤 하여 오이가 잘 되었는데, 초나라 사람은 게을러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 오이가 잘 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초나라 수령이 양나라의 오이가 잘된 것이 싫어 밤중에 몰래 끊어버려 양나라 오이 중에 말라버린 것이 생겼다. 양나라 정장(亭長)이 보복으로 초나라 오이를 끊어버리려고 하자, 송취는 “이는 재앙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말리고는 사람을 시켜 밤중에 몰래 초나라 오이밭에 물을 주라고 하였다. 초나라 정장이 매일 아침 밭에 나가 보면 오이에 이미 물이 주어져 있고, 또한 오이가 날로 좋아지고 있었다. 살펴보니 양나라 정장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초나라 수령이 대단히 기뻐하여 이 일을 초나라 왕에게 보고하였더니, 초나라 왕도 양나라 사람의 남모르게 행한 일을 기뻐하여 크게 사례하고 양나라 왕과 우호를 맺었다.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대[交承]’에는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어야 하니, 내가 내 후임자에게 당하기 싫은 일은 나도 나의 전임자에게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전임자와는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기 때문에 교대할 때에 옛사람들은 후덕함을 좇아, 전임자가 비록 탐욕스럽고 불법을 저질러서 그 해독이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화평하고 조용히 고쳐서 전임자의 행적이 폭로되지 않게 하는 데 힘썼다. 만일 급박하고 시끄럽게 일일이 지난 정사를 뒤집고 큰 추위 뒤에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자처하여 혁혁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는 그 덕이 경박할 뿐 아니라 뒤처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전임자의 가족이 아직 떠나지 못하여 읍내에 남아 있으면, 떠날 채비의 여러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마음을 다해 보살펴야 한다. 혹시 경박한 아전들이 전임자를 배반하여 가증스런 태도를 보이면 그러지 말도록 깨우쳐주고, 그래도 너무 심하게 구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전임자의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 죄가 있으면 도와주어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전임자가 공급에 손을 댔거나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축내었거나, 혹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면, 들추어내지 말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기간이 지나도 보상하지 않으면 상사와 의논한다.

혹 전임자가 세력 있는 집안이나 호족(豪族) 출신이어서 자신의 강함을 믿고 일처리가 이치에 어긋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강경하고 엄하게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굽혀서는 안된다. 비록 이 때문에 죄를 얻어 평생을 불우하게 지내더라도 머뭇거리서는 안된다.

후한의 호문공(胡文恭)이 호주(湖州)를 맡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전임자인 등(滕)공이 크게 학교를 세워 수천만금의 돈을 쓰고도 일을 마치지 못하고 파직되어 갔다. 여러 소인배들이 등공이 돈을 지출한 것이 명백치 못하다고 비방하면서 통판(通判) 이하가 인계 장부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호문공이 “그대들이 등공을 보좌한 지 오래 되지 않았는가? 그에게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왜 일찍 충고하지 않고 가만히 팔짱만 끼고 보고 있다가 그가 떠날 때를 기다려 이제서야 나쁘다고 말하는가? 이것이 어찌 옛사람들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뜻이겠는가?” 하니 모두가 매우 부끄러워하였다.

대체로 정사의 관대한 것과 가혹한 것, 명령과 법령의 득(得)과 실(失)은 서로 이어받고 서로 변통하기도 하여 그 잘못된 점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구양수(歐陽修)가 개봉부(開封府)를 맡았는데, 그는 전임자인 포중(包拯)의 위엄있는 정사 대신에 간단하고 편하게 순리를 따를 뿐 혁혁한 명성을 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포중의 정치를 그에게 권하자, 그는 “대개 사람의 재능과 성품은 서로 달라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 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으니 나는 내가 능한 대로 할 뿐이오”라고 말하였다. 그는 여러 군(郡)을 거치면서 치적을 구하지 않고 관대하고 간략하

며 시끄럽지 않은 것에 뜻을 두었다. 따라서 그가 벼슬살이한 곳이 큰 군이었지만 부임한 지 보름이 지나면 벌써 일이 열 가지 중에서 대여섯 가지가 줄어들고, 한두 달 후가 되면 관청이 마치 절간처럼 조용해졌다. 어떤 사람이 “정사는 관대하고 간략하게 하는데 일이 해이해지거나 중단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자, 그는 “방종한 것을 관대한 것으로 알고, 생략하는 것을 간단하고 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해이하고 중단되어 백성이 폐해를 받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관대하다는 것은 가혹하게 급히 서둔다는 것이 아니며, 간단하고 편하다는 것은 번잡스럽지 않다는 것뿐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일찍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관리의 재능 여부와 시책이 어떠한가를 물어야 한다. 백성이 편안하다고 하면 곧 그가 훌륭한 수령이다”라고 말하였다.

4. 보고서[文報]

공적으로 보내는 문서는 아전들에게 맡기지 말고 꼼꼼히 생각해서 자신이 직접 써야 한다.

『다산필담』에 말했다. “지금 사람들은 주자의 저술에서 오직 서간(書簡)만을 취하여 성리설(性理說)만 보고 한 구절을 따다가 글에 써먹으려 하며, 주자 학문의 현실적인 면은 주자가 관에 있으면서 쓴 공문들을 모은 「공이제편(公移諸篇)」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수령 된 자는 마땅히

「공이제편」을 책상에 놓아두고 때때로 읽고 외우며 본떠서 속된 벼슬아치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한위공(韓魏公)은 행정실무에 근면하여 장부나 문서를 살피고 따지는 일을 모두 직접 하였다. 좌우의 누군가가 “공은 지위가 높고 나이도 많으실 뿐 아니라 공명 또한 높아 조정에서 한 고을을 맡아 쉬도록 한 것입니다. 조그만 일까지 직접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그가 “내가 수고로움을 싫어하면 아전과 백성들이 폐를 입을 것이다. 또 녹봉이 하루 만 전(錢)인데 일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찌 편안할 것이냐?”고 답하였다.

명성과 지위가 자못 높은 사람들이 고을을 맡으면, 대강만 파악하고 조그만 일은 직접 하지 않고 오직 풍류를 즐기려고만 하니 이것이 옳겠는가?

공문의 격식과 문구가 경사(經史)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생(書生)이 처음 부임하면 당황하는 일이 많다.

이두(吏讀)는 신라의 설총(薛聰)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중에는 난해한 것도 있다. 수령은 경관(京官)으로 있을 때 아는 사람에게 배워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것을 ‘등보(騰報)’라 하고, 요약만 기록한 것을 ‘절해(節該)’라고 한다. 모름지기 평소에 상세히 익혀두어서 서툴다는 비난을 듣지 말아야 한다.

『상산록(象山錄)』에서 말했다. “평안도와 황해도에 부임하는 경우는 마땅히 중국의 공문 서식을 보고 그 문구들을 알아둬야 한다. 건륭 말년(1790년대초)에 요동의 봉황성(鳳凰城) 장군이 의주부윤(義州府尹)에게 공

문을 보내 칙사(勅使)가 늦어진 까닭을 알려왔다. 그 문서가 황주(黃州)에 도착하도록 관찰사 이하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중앙에 보고하지 못한 까닭에 거의 사고가 날 뻔하였다. 만약 평소에 사역원(司譯院)의 문자를 섭렵하고 공문의 문구들을 익혔다면 어찌 당황할 까닭이 있었겠는가.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실용문자를 익히지 않아서 생긴 폐단이 이와 같았다.”

폐단을 보고하고, 어떤 것을 청구하며, 상사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등의 문서는 반드시 문장이 조리가 있어야 하고 성의를 간절하게 보여야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천하에 가장 천해서 의지할 데 없는 것도 백성이요, 천하에 가장 높아서 산과 같은 것도 백성이다. 요순(堯舜)시대 이래로 성현들이 서로 경계한 바가 백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모든 책에 실려 있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상사가 비록 높아도 수령이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우면 대부분 굴복할 것이다. 정택경(鄭宅慶)은 바닷가 출신의 무인이지만 언양현감(彦陽縣監)이 되어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우자 감사가 굴복하였고, 의주 출신인 안명학(安鳴鶴)은 강진현감(康津縣監)이 되어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워서 감사를 굴복시키고 그것 때문에 명성이 퍼져 벼슬길이 열렸다. 본래 백성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수령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옛날에 한 승지(承旨)가 서도(西道)의 수령으로 나갔는데 파직을 당할까 겁을 내 마땅히 싸워야 할 경우에도 싸우지 않자, 감사가 그를 비루하

게 보고 폄하해서 쫓아버렸다. 이같은 일을 나는 많이 보았다. 백성을 위해서 건의할 경우에는 마땅히 이롭고 해로운 점을 상세히 진술하되, 위에 있는 사람의 느낌에 부합하도록 지성을 다해야 한다. 두번 세번 해도 성사되지 않으면 결연히 거취를 정해야 한다. 비록 이 일로 파면을 당해도 앞길이 다시 열릴 것이다. 앉아서 백성의 곤경을 보고만 있다가 마침내 죄책에 빠지는 경우와는 크게 다를 것이다.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서는 지우고 고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도적의 옥사(獄事)에 관한 문서는 봉합을 엄중히 해야 한다.

내가 장기(長耆)로 귀양가 있을 때 본 것이다. 한 아전이 살인을 했는데, 여러 아전들이 짜고 간계를 부려 감시장을 온통 고쳐버렸다. 감영으로부터 판결문이 오자 현감이 깜짝 놀라고 의심했지만, 결국 간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살인범을 석방하고 말았다. 감영의 판결문이 내가 보고한 것과 다를 경우에는 급히 감영에 가서 원장을 찾아 읽어보아야지 단지 의심만 품고 그칠 일이 아니다.

큰 도적은 그 일당이 널리 퍼져 있으며 군교나 형리들이 그들의 첩자 일지도 모른다. 탐문과 수색에 관한 문서는 응당 비밀로 하고 거둬 봉해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웃 고을에 보내는 문서는 문장을 잘 만들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라는 것은 옛사람의 훈계이다. 문벌이나 덕망이 비슷하여 서로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앞서고자 하다가 반목하게 되고 모두에게 알려져 웃음을 사게 되니, 예의가 아니다. 공경하면서 예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역참(驛站)의 책임자, 목장(牧場)의 감독관, 변방의 무장들은 비록 문벌은 낮지만 모두 관청의 책임자이므로 마땅히 서로 존경하고 언사를 조심해 한결같이 공손하면 좋지 않겠는가.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문서들을 기록해 책자를 만들어 뒷날 참고하도록 하고,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자를 만들어둔다.

상사에게 보고한 것들은 책자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전한 명령도 책자로 만들되 글자를 바르게 써서 항상 책상 위에 비치해둔다. 일상적이거나 긴급하지 않은 문서들은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다.

5. 공물 바치기[貢納]

재물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서 나라에 바치는 자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너그럽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지 못하면 비록 수령이 엄하게 하더라도 아무런 보탬이 안된다.

백성들은 좁쌀·쌀·실·삼 등을 내어서 위를 섬기는 것을 자기들의 본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까닭없이 납부를 거부할 리는 없다. 늘 보면 어리석고 우둔한 수령들 가운데에 백성을 어루만지고 돌본다고 하는 자는 으레 상납(上納)의 기한을 어기고, 나라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자는 으레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도록 마구잡이로 빼앗는다. 진실로 현명한 수령은 너그럽이 하되 기한을 어기지 않아 상하 모두가 원망이 없으니, 그 이치는 쉽게 깨칠 수 있을 것이다.

『정잠(政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금 징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 이는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어루만지고 돌보는 것이며, 형벌은 착오가 없어야 하니 이는 형벌하면서도 교화하는 것이다. 봄에 궁한 백성 구제는 마치 자식처럼 하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기는 마치 원수처럼 해야 한다. 한 이익을 일으키는 것은 한 폐해를 제거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한 일을 만드는 것은 한 일을 감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위엄은 청렴함에서 생기고 정사는 부지런함에서 이루어진다.”

쌀과 무명베로 내는 전세(田稅)는 나라 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넉넉한 백성으로부터 먼저 징수하여 아전이 횡령하는 것을 없게 해야만 상납 기한을 맞출 수 있다.

오늘날 나라의 재정이 날로 줄어들어 백관의 봉록과, 중앙관청에 물품을 공급한 상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쌀을 제대로 결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넉넉한 백성의 기름진 토지는 모두 아전의 전대 속으로 들어가고, 조운선에 세곡을 실어 보내는 것은 해마다 기한을 어겨, 체

포되어 문초당하고 파면되어 갈리는 수령이 줄줄이 뒤를 잇고 있으나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애석한 일이다.

호태초(胡太初)는 말하였다. “평소에 부유하고 힘센 자들과 밀착되어 있는 고을 아전들은 해마다 이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단지 착하고 어진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기한에 앞서 재촉하고 핍박하여 세금을 내도록 한다.”

중국 역시 그러하니 이는 천하의 공통된 폐단이다.

『한암쇄화』는 세미(稅米)에 관한 조항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마땅히 호조에 납부해야 할 것이 4천 석이라면 자기 고을에서 백성으로부터 징수한 것은 1만 석도 훨씬 넘는다. 아침에 명령을 내려 저녁에 거둬들일 수 있는 넉넉한 집의 윤기 있는 입쌀은 아전이 모두 횡령한다.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은결(隱結)로 거두고, 혹은 궁결(宮結)이라 하여 수세장부(收稅帳簿)에서 빼버리고, 혹은 저가(邸價)로 거두고, 혹은 거짓 재결(災結)로 수세장부에서 빼버리고, 혹은 돈으로 받고, 혹은 쌀로 받는다. 이미 초가을부터 구름이 몰려가듯이 냇물이 흘러가듯이 끝내버려 속여 훔쳐 먹은 액수는 모두 아전의 전대 속으로 들어간다. 이르고 나서 나머지 토지에서 세미를 모아 나라에 내는 4천 석을 채운다. 무릇 나라에 내는 세금을 온 집안이 몰사한 집, 유리결식을 떠나 없어진 집, 홀아버, 과부, 아버지가 죽은 아들, 아들 없는 아버지, 노인, 병자, 황폐화하여 경작을 쉬는 논밭과 못쓰게 된 논, 축대가 우거지고 자갈이 뿔구는 땅 등에서 충당하고자 하니 쌀을 벗기고 뼈를 긁어내도 어쩔 도리가 없는 무리일 따름이다. 아전은 횡령한 쌀을 높은 돛배에 싣고 남으로는 제주에 가서 장사하고 북으로는 함흥에 가서 거래한다. 아전은 채색한 복을 뽕뽕거리며 저 구름과 물이 맞닿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수령은 바야흐로 훌

아버지와 과부, 병든 자들을 잡아다가 독촉하니 매질이 뜰에 가득하고 칼을 씌워 가둔 자가 옥에 넘친다. 사람을 뽑아 검독(檢督)이라고 칭하고서 사방으로 풀어 보내면, 그들은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징수하여 엉뚱한 해를 입힌다. 송아지와 돼지를 빼앗고, 술을 가져가니 울부짖는 백성은 길에 넘어지고 쓰러져 곡성이 하늘에 사무친다.

순조 9년(1809)과 14년에 남쪽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나는 바닷가의 마을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다. 이로써 보건대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에게 귀중한 것은 '밝을 명(明)' 한 자뿐이다.

공물(貢物)과 토산물(土產物)은 상급관청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도를 각별히 이행하고 새로이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조계원(趙啓遠)이 수원부사(水原府使)가 되었는데, 그 고을의 약과(藥果)가 나라 안에서도 유명하였다. 인조가 병이 들었는데 당시 수라간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환관이 사람을 보내어 수원부의 약과를 요구하자, 조계원은 “고을에서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신하로서 군주를 섬기는 체모가 아니다. 조정의 명령이 없으면 바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인조가 이를 듣고 웃으면서 “비록 임금과 신하의 사이라 할지라도 어찌 인척으로 얽힌 인정마저도 없을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잡세(雜稅)와 잡물(雜物)은 가난한 백성들이 무척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만 나라에 납부하도록 하고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거절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경여(李敬輿)가 광해군 때에 충원현감(忠原縣監)이 되었다. 어느 여름날 백성들에게 칙을 캐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어디에 쓰러는 것인지 짐작조차 못했다. 다음해 봄에 종묘나 궁궐의 건물들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관청인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칙을 수천 다발 징수하자 칙값이 삼값과 같아졌으나 그 고을 백성들은 미리 마련했기 때문에 유독 편안하였다. 더욱이 내고도 남은 것은 다급한 이웃 고을에 팔아서 다른 부세(賦稅)에 충당하였다. 또 영건도감에서는 장목(長木) 수만 개를 징수하였다. 일찍이 고을 북쪽에 있는 산에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서 특별히 벌목을 금지해두었던 이경여가 여러 상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가운데 저 나무들을 베어서 영건도감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상인들은 모두 기뻐 날뛰며 호응하였다. 이웃 고을 백성들은 장목을 마련하느라 부산하였으나 그 고을 백성들만 유독 노동의 역(役)이 없었다.

6. 차출되는 일[往役]

상급관청에서 차출하면 모두 받들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고나 병을 핑계대고 스스로 편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군자의 의(義)가 아니다.

상급관청이 차출하여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사양하여 면하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니, 그 사람이 원망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해서 안된다. 실제로 사고가 없으면 순응하는 것이 옳다.

차출되면 마땅히 진심으로 책임을 다해 일을 해야지 마지못해 해서 안된다.

궁묘(宮廟)의 제사 때 차출되어 제관이 되면 마땅히 재계(齋戒)하고 정성을 들여 지내야 한다.

오늘날의 제관은 제단이나 사당 곁에서 기생을 끼고 즐기기도 하고 술을 싣고 다니며 행락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가 아니다. 목욕재계하고 경건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을 소홀히 말며, 제사 때에 오르내리고 구부리고 엎드리는 일을 함부로 해서 안된다. 더럽고 이지러진 제기(祭器)를 그대로 써서도 안되며, 상한 고기나 시어진 술을 그대로 써서도 안된다. 군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곳을 간들 진정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장(科場)에 경관(京官)과 함께 고시관으로 차출되어 나가게 되면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하며,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한다.

수령으로서 시험관이 되면 반드시 자기 고을 유생들과 서로 짜고 사사



소과(小科) 시험장의 풍경

로운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몇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는 반면 온 도의 사람이 원한을 품을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수령으로서 시험관이 된 사람이 팔짱 끼고 입 다물고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것도 의로운 일이 아니다. 합격자 명단을 임금에게 보고할 때는 시험관도 그 끝에 서명하게 되어 있어,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하였으면 그 죄를 함께 나누어져야 하니, 시험관이 되어 어찌 자리만 차지하고 있겠는가? 경관이 보잘것없는 글을 뽑으려 하면 다투어야 하고, 좋은 글을 버리려 해도 다투어야 하며, 또 뇌물을 받은 흔적이 있으면 다투어야 하고, 사사로운 정을 둔 흔적이 있어도 다투어 반드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합격자 명단을 작성해야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것이다. 무릇 수령이 된 사람의 재능과 도량이 적으면 명예가 한 고을에 그치겠지만, 크면 명성이 한 도에 가득 차는 바, 그의 인품은 여기에서 정해진다.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옥사(獄事)의 검시관(檢屍官)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나라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무원록(無冤錄)』의 주(註)에 “검시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된다. 혹 같은 도의 이웃 고을 수령들이 검시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도의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어 검시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였지만 지금은 폐지되었으니 마땅히 이치에 합당하다면 다시 시행해야 한다.

살피건대 법례(法例)가 비록 이러하지만 인접한 다른 도의 수령에게

문서를 보내어 청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혹 청했다고 해도 수령의 부신(符信)을 차고 도의 경계를 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올 수가 없다.

수령들의 업무평가서를 살펴보면, “검시를 피했으므로 마땅히 경고해야 한다”고 하여 그 성적이 중(中)으로 매겨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검시를 왜 어려워하는가?

조사관이나 검시관이 된 수령이 판단하기 어려운 옥사가 있으면 자제나 친지들 가운데 정직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 하나를 골라 옥사가 일어난 고을에 미리 몰래 보내 사정을 조사하게 한 후, 수령이 그 고을에 가서 밤을 타서 그 사람과 만나거나 혹 서신으로 조사한 바를 전해 받은 후에 간악한 일이나 숨겨진 일을 적발하면 잘못 판단하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늘 보면 조사관이나 검시관이 미리 몰래 조사시키지도 않고 데리고 간 아전을 시켜 은밀히 여론을 묻지만, 아전이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아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경우는 첫번째 조사나 검시에서는 잘못 판결하지 않았는데 두번째 조사나 검시에서 이유 없이 판결이 뒤엎어지고 옥사의 진상이 의심스러워지며 억울하게 걸린 자가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옥사가 일어난 고을에 또다른 일이 일어나거나, 이웃 고을에서 조사하러 온 수령이 과오를 범하게 되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표류선(漂流船) 조사는 급하지만 어려운 일이니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표류선을 조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외국인과의 예의는 마땅히 서로 공경해야 한다. 늘 보면 우리나라

라 사람은 저들의 짧은 머리와 좁은 옷소매를 보고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업신여겨 접대할 때의 문답에 체모를 잃어 경박하다는 이름이 천하에 퍼져 있으니, 이것이 첫째로 조심할 일이다. 각별히 공손하고 충실하고 신의 있게 하여 큰 손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법에 표류선 안에 있는 문자는 인쇄본이거나 사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초록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표류선 한 척이 수만 권의 책을 가득 싣고 무장(茂長) 앞바다에 정박하였는데, 이를 조사한 관리들이 의논하기를 “장차 이를 모두 초록하여 보고하는 일은 작은 새가 흙을 물어 바다를 메우는 일과 같다. 만약 그 가운데 몇가지만 골라 초록하면 반드시 엉뚱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마침내 모래밭을 파고 모든 책을 묻어버리니 표류인들은 크게 원통해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나의 친구 이유수(李儒修)가 그 뒤에 무장현감이 되어 모래밭에서 『삼례의소(三禮義疏)』 『십대가문초(十大家文鈔)』 같은 몇권의 책을 얻었는데, 아직도 물에 젖은 흔적이 있었다. 내가 강진에 도착하여 『연감유함(淵鑑類函)』 한 권을 얻었는데 이미 심하게 썩었기에 “이 책이 무장에서 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크게 놀랐다.

대개 세상일이란 것이 본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이루지 못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산을 겨드랑이에 끼고 바다를 뛰어넘으라고 했을 때 신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하여 정부에서 죄를 주면, 이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겠는가? 그런즉 마땅히 모든 서적을 진열하고 다만 책이름만을 기록하되 그 권수를 상세히 해두고, “싣고 다니면 소가 땀을 흘릴 만하고, 집에 쌓아두면 천장에 닿을(汗牛充棟) 정도로 많은 책을 갑자기 초록할 수 없어 책이름만을 기록하였다”고 보고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견책을 당하더라도 오직 웃음을 머금고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거늘, 도둑처럼 보물을 함부로 버린다면 그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오직 이치에 따르겠다고 마음먹고, 벼슬 떨어질까 겁내는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셋째, 표류선을 조사하는 일은 반드시 섬에서 일어난다. 섬사람들은 본래 호소할 길이 없는 사람들인데, 조사하는 일에 따라간 아전들이 조사관의 접대를 빙자해 침탈을 마음대로 해 술과 향아리까지도 남기지 않는다. 표류선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몇개의 섬이 모두 망하기 때문에, 표류선이 도착하면 섬사람들은 반드시 칼을 빼어들고 활을 겨누어 그들을 죽일 기색을 보여 도망가게 만든다. 또 혹시 바람이 급하게 불고 암초가 사나워 파선 직전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청해도 섬사람들은 침몰하도록 내버려둔다.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고 나면 은밀히 모의하여 배와 화물을 불태워 그 흔적을 없앤다. 10여 년 전에 나주 지방의 여러 섬에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태워버린 염소가죽이 수만 벌이고 감초 탄 것이 수만 곡(斛)이었다는데 불에 타고 남은 것이 있어서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아둔한 수령들이 아전들을 단속하지 못해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니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런 짓을 해버린다. 해외의 여러 나라가 만약 이 일을 들으면 우리를 사람고기로 포를 떠 썰어먹는 나라로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표류선을 조사하는 관리들은 마땅히 눈을 밝게 뜨고 엄하게 살펴서 아전들의 침학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큰 집 한 채를 따로 빌려 가마솥을 늘어놓고 아전들을 한 집에 같이 있게 하며, 그들이 먹는 쌀이나 소금은 관에서 돈을 주고 사들여 날마다 배당해야 한다. 잘 계획하여 한톨의 쌀이나 한줌의 소금이라도 그곳 백성에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좋은 것을 보고 실천하는 것은 작은 일도 그래야 한다. 지금 해외 여러 나라의 조선술이 많이 발전하여 운항에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데도 조선술은 소박하고 고루하다. 표류선을 만날 때마다 그 선박을 상세히 그려두고 재목은 무엇을 썼고 배전의 판자는 몇장을 썼으며, 배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는 몇 도나 되며, 배 앞머리의 구부리고 치솟은 형세는 어떠하며, 돛·돛대·상앗대·노·키 등의 모양은 어떠하며, 배의 구멍난 부분을 어떻게 메우는지 등의 배를 수리하는 법과, 익판(翼板)이 파도를 잘 헤치게 하는 기술은 어떠한가 등의 여러가지 신묘한 이치를 상세히 조사하고 기록하여, 그것을 모방할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표류인이 상륙하면 그 배를 큰 도끼로 쪼개고 부수어 즉시 불태워 없애버리려 하니, 이것이 무슨 법인가? 뜻있는 선비가 이런 일을 말았으면 마땅히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동정하는 빛을 보여야 하며, 음식물 등 필요한 것은 신선하고 깨끗한 것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정성에 그들도 감복하여 기뻐할 것이며 돌아가서 좋은 말을 할 것이다.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을 감독하게 되면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써야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옛날에 하천을 준설하거나 성을 쌓는 일은 모두 군현의 백성을 부역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호수를 파거나 성을 쌓는 일은 각 고을에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이 일을 돕게 하였다. 이때 훌륭한 수령은 백성들의 환심을

을 얻어 그들이 칭송하는 소리가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다. 늙고 여윈 사람은 부역을 면하여 돌아가게 하고, 굶주리고 넉넉한 사람을 구분하여 부담을 고르게 하며, 담배와 술을 주고 노래로써 일을 권하며, 부지런한 이를 칭찬하고 게으른 사람을 경계한다면, 백성들이 분발하여 공사가 빨리 완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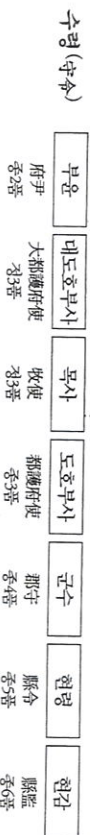
정백자(程伯子)가 현령이 되어 부역을 감독할 때 심한 추위와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가죽옷을 입거나 일산을 바치는 일이 없었다. 때때로 공사장을 돌아보아도 일꾼들은 그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마다 힘껏 일하여 언제나 기한 전에 일을 끝냈다. 선생의 기상이 맑고도 공손하여 속세 밖에 있는 것 같았으며, 일을 당하면 항상 미친한 사람들과 기거와 음식을 같이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일에도 선생은 대처함에 여유가 있었다. 어느 땐가는 일꾼들 가운데 밤중에 떠드는 사람이 많아서 한 사람이 놀라게 되면 여러 사람이 다투어 일어나고, 간악한 사람이 그 틈을 타 도둑질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선생이 이들을 균율로 다스리니 드디어 떠드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공사가 끝나고 일꾼들이 해산할 때도 그 대열이 평상시와 같이 정연하였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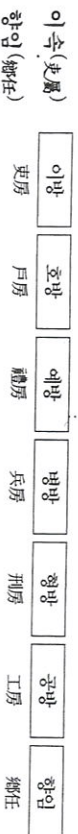
관찰사

觀察使

▲ 전국 8도의 행정장관. 감사(監司)라고 약칭하는데, 왕권을 대행하였다.



▲ 고을 크기와 품계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모두는 관찰사의 직할을 받았으며 왕권을 대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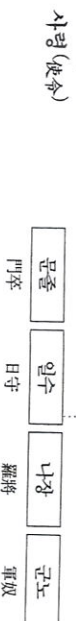


▲ 이속(吏屬): 수령의 행정사무를 보좌하는 중인 신분의 관속(官屬).

▲ 향임(鄉任): 각 고을마다 유력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는 향청(鄕廳)의 임원. 최수 1인 및 별감(別監) 2-3인이 있었다.



▲ 수령의 군사·경찰 업무를 보좌하는 관속.



▲ 문을 지키거나 심부름하거나 죄인을 모조하는 등의 일을 하는 관속.

로나
1하기
으니,
고대
종적
개는
이것
하였
다.

수

있
렸
다,